11-1220299-000010-01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GUIDEBOOK

FTA
일반특혜
비특혜 원산지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Bus
Ma
Cust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

Guidebook

san
ain
toms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GUIDEBOOK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현재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56개 국가와 16개 FTA를 발효 중입니다.

이러한 FTA 체결국의 확대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출입기업이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오류로 협정관세가 불인정 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해외 관세당국의 비특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검증 결과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대로 활용하고 검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FTA부터 일반특혜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망라한「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원산지증명을 활용하는 우리 수출입기업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 12.

부산본부세관장 **이 명 구**

이 명 구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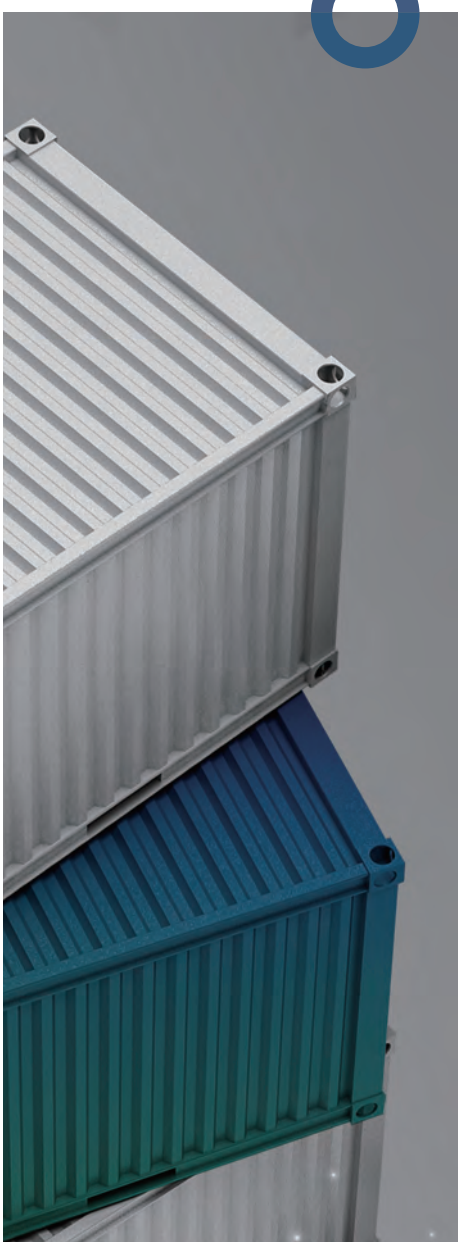

1장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1절 개요

12 **1. 의의**
13 **2. 분류**
3. 발급 절차
14 (1) 기관 발급
16 (2) 자율 발급

2절 FTA 원산지증명서

1. 기관 발급
17 (1) 한-싱가포르 FTA
22 (2) 한-아세안 FTA
27 (3) 한-인도 FTA
30 (4) 한-중국 FTA
34 (5) 한-베트남 FTA

2. 자율 발급
38 (1) 한-칠레 FTA
41 (2) 한-EFTA FTA
43 (3) 한-EU FTA
52 (4) 한-미국 FTA
56 (5) 한-터키 FTA
58 (6) 한-캐나다 FTA
61 (7) 한-뉴질랜드 FTA
65 (8) 한-콜롬비아 FTA
68 (9) 한-페루 FTA
71 (10) 한-중미 FTA
74 (11) 한-영국 FTA

3. 기관 & 자율 발급
76 (1) 한-호주 FTA

3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81 1.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86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
89 3.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92 4.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95 5. TNDC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4절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98 1. 개요 및 발급 절차
102 2.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2장 원산지 인증수출자

1절 개요

108 1. 도입 배경
109 2. 제도 정의
109 3. 종류 및 혜택

2절 운영

1. 인증 신청

110 (1) 근거
110 (2) 신청 전 구비요건
112 (3) 심사 기준
114 (4) 업무 절차

2. 신청 준비 서류
116 (1) 인증신청서
118 (2) 원산지소명서
120 (3) 제조 공정도
121 (4) 원산지(포괄)확인서
123 (5) 소요 부품 및 제조원가 명세서
124 (6)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124 (7)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125 (8)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126 (9)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참조 사이트

3. 사후관리
127 (1) 연장 신청
127 (2) 변경 신청
127 (3) 관리 방식
128 (4) 시정 명령 및 인증 취소

3장 서류 보관

1절 개요
130 1. 배경
130 2. 유의사항 및 보관 기간

2절 서류 보관 가이드
132 **1. 공통사항**

2. 원산지 기준별 보관 서류
133 (1) 완전생산기준
134 (2) 세번변경기준
135 (3) 부가가치기준
136 (4) 가공공정기준

137 **3. 당사자별 보관 서류**

138 **4. FTA PASS를 활용한 서류 보관 방법**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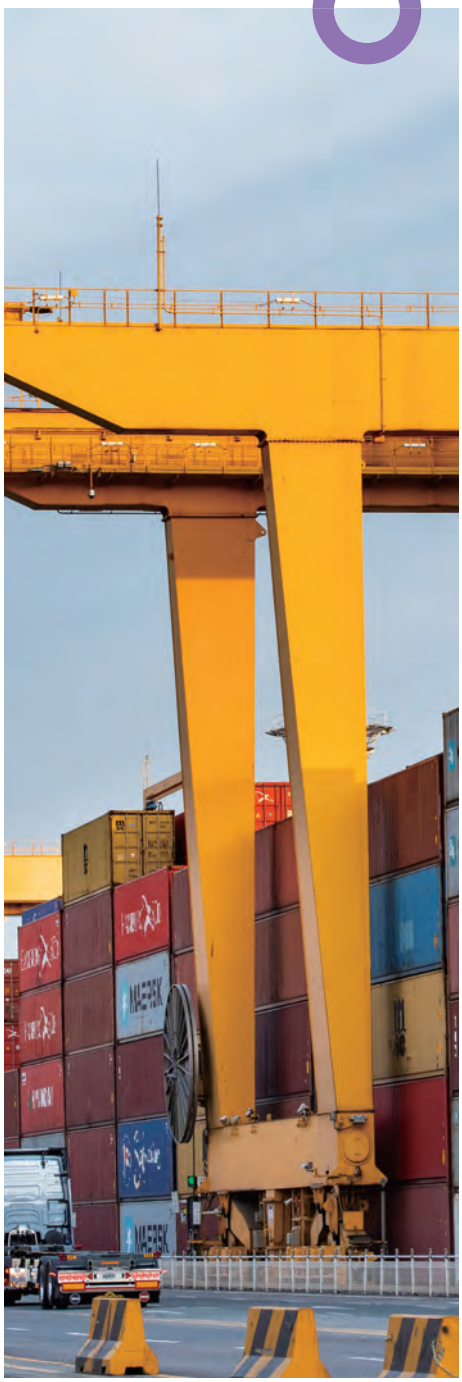

4장 관련 업무 지침

142 1.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146 2.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

147 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149 4.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운영기준 개선

150 5. 한-인니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절차

152 6. **[직접운송]**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

154 7. **[직접운송]** FTA 협정 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160 8. **[직접운송]** 홍콩해관 APTA 중국발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62 9. **[직접운송]**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65 10. **[직접운송]** 철도복합운송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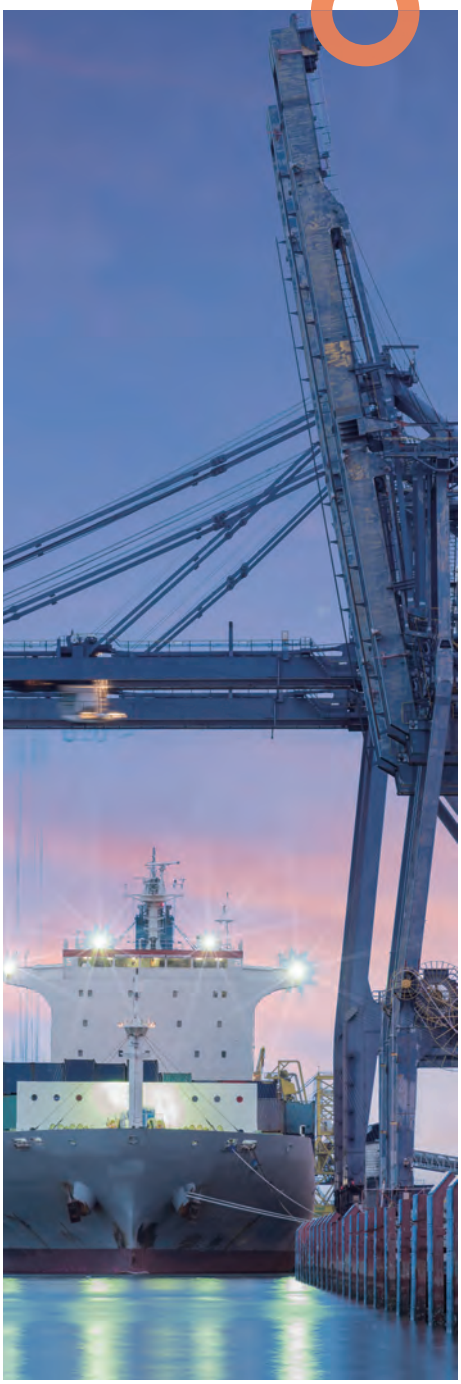

5장 FTA 활용 유의사항

168 1.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직물' 누적기준 활용

169 2. 對 베트남 조미김 수출 시 유의사항

170 3. 對 터키 수출기업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172 4. 한-미 FTA 섬유류 미소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174 5. 인도 측 한-인도 CEPA 및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방법

176 6. 인도 원산지 검증 강화에 따른 한-인도 CEPA 활용 유의사항

179 7. 한-아세안 FTA의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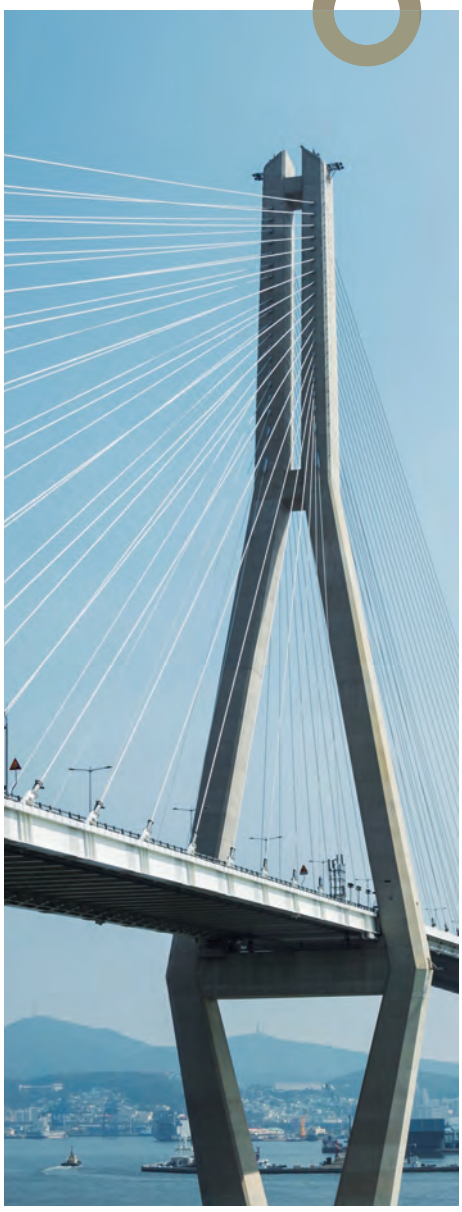

6장 참고사항

182 1. 협정별 세율 정보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방법

186 2. 원산지관리전담자 관련 교육 사이트

188 3.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190 4. FTA 협정별 인장 및 서명 통보 의무

191 5.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비교

192 6. FTA 협정별 HS 기준

193 7. 한-중 FTA 중국 측 C/O 발급 방식 개선 현황

194 8. 중국·인도네시아 통관 진행정보 조회

196 9. 국가별 C/O 발급정보 조회

197 10.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199 1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200 12. 미국·베트남 현지 공익관세사 제도

※ 유의사항

본 책자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원활한 FTA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내용을 유권해석, 업무처리, 관세 관련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

Guidebook

1

원산지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1절 개요

1. 의의
2. 분류
3. 발급 절차

2절 FTA 원산지증명서

1. 기관 발급
2. 자율 발급
3. 기관 & 자율 발급

3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1.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
3.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4.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5. TNDC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4절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1. 개요 및 발급 절차
2.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1절 개요

1. 의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 어떤 물품이 성장(Growth)하거나 생산(Produce),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함. 다만, 한 나라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홍콩 등과 같이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도 독립관세 영역이나 자치권 보유 등 경우에 따라서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자본 투자국, 브랜드 소유국, 기술 제공국과는 다르며, 원산지와 상표를 혼합한 개념인 지리적 표시와도 구분됨. 또한 세관 절차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관세법상의 내국·외국 물품 개념과도 다름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관세 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누어짐

FTA 원산지증명서의 필요성

- FTA는 협정 체결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협정국 물품과 비협정국 물품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
-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당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 발행 주체, 작성요령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분류

특혜 유무에 따른 분류

	특혜 원산지증명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제	•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 상공회의소
특징	• 관세의 면세 또는 인하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 표시 문제 및 불공정 무역 행위(덤핑) 등을 이유로 요구
종류	• FTA(자유무역협정) C/O •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C/O • GSP(일반특혜관세) C/O • GSTP(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 C/O	•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에 따른 분류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	자율 발급
정의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및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제도
장점	• 우회 수입 방지 효과 • 수출입에 대한 공신력 증대	• 발급 절차 신속성 및 경비 절감 • 통관 절차 간소화 • 계약 양자 간 자율책임
단점	• 발급 절차 중복·절차 복잡 • 발급 시간·비용 증대 • 형식적인 증명서가 늘어날 가능성	• 허위 증명 가능성 • FTA 협약 내용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피해 발생 우려
대상 협정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 칠레, EFTA, EU, 미국, 터키,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영국
	• 호주 : 한국 → 자율 발급, 호주 → 기관 발급, 자율 발급 • 페루 : '16. 7월 이전 → 기관 발급, 자율 발급(인증수출자 또는 $2,000 이하 수출자) '16. 8월 이후 → 자율 발급으로 단일	

3. 발급 절차

(1) 기관 발급

신규	세부 사항
신청 (주체 : 수출자)	• **신청 기한 : 선적 완료 전까지 신청** - 한-아세안 :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한-인도 :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 일수 7일 이내 - 한-중국 : 선적 이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 한-베트남 : 선적 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제출 서류** -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발급기관의 전산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것으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한정) - 원산지소명서 - 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나 제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자는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제외한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심사 (주체 : 기관)	• **심사 내역** - 신청인의 신청 자격 유무 -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 -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 품목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발급신청서의 기재 요령 일치 및 신청 서류 구비 여부 • **아래의 경우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 동안 심사 생략 가능 : (접수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 AA 등급 이상) - 최근 1년 이내 원산지 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 **현지 확인**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주체 : 기관)	• **1회 발급 원칙** • 기한 : 신청받은 날로부터 3일 내 (현지 확인 필요 시 10일 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보정 기간 (5~10일) 제외 • 발급 부수 - 원본 1부, 부본 2부로 총 3부 (인도는 원본 1부, 부본 3부로 총 4부)

신규	세부 사항
재발급	• **사유** : C/O 발급받은 자의 분실·도난·훼손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제출 서류** : 재발급신청서, 사유서, 원산지증명서 4부본 (인도와의 협정만 해당) • **한-싱가포르** : C/O 15란, 한-아세안 : C/O 12란, 한-인도 : C/O 6란, • **한-베트남** : C/O 12란에 "CERTIFIED TRUE COPY" 날인 후 재발급 • **한-중국** : C/O 5란에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____dated____" (~일에 발급된 ~번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 문구 기재 후 재발급
정정 발급	• **사유** : 수출신고 수리필증 정정, C/O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 오류 등 • **제출 서류** : 정정발급신청서, 정정발급신청사유서, 사유입증서류, 원산지증명서 원본
소급발급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신청 가능** - 사유 :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한-싱가포르** : C/O 15란 ISSUED RETROACTIVELY **한-아세안** : C/O 12란 ISSUED RETROACTIVELY **한-인도** : C/O 6란 ISSUED RETROSPECTIVELY **한-중국** : C/O 5란 ISSUED RETROACTIVELY **한-베트남** : C/O에 ISSUED RETROACTIVELY 날인 후 발급 • 단, 한-아세안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C/O 발급 또는 한-인도의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 일수 7일 이내 C/O 발급 시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음

(2) 자율 발급

신규	세부 사항
발급	• **근거 서류** - 원산지 확인서 - 원산지 소명서 -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 **증명 방식** - 한-칠레 : 수출자/통일서식(제5.2조 3) - 한-EFTA : 수출자 또는 생산자/송품장의 문안 기재(부속서 1의 부록 3) - 한-EU : 수출자/송품장 문안 기재(부속서 3) - 한-페루 : 수출자 또는 생산자/통일서식(부속서 4-나) - 한-미국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필수항목 기재(제6.15조 2) 권고서식 - 한-터키 : 수출자/송품장 문안 기재(부속서 3) - 한-호주 : 수출자 또는 생산자/필수항목 기재(부속서 3-다) 표준서식 - 한-캐나다 : 수출자 또는 생산자/통일서식(제4.1조 1) - 한-뉴질랜드 : 수출자 또는 생산자/필수항목 기재(제3.19조) 권고서식(2종)(부속서 3-다) - 한-콜롬비아 : 수출자 또는 생산자/통일서식(부속서 3-다) - 한-중미 : 수출자 또는 생산자/통일서식(제3.17조 2) - 한-영국 : 수출자/송품장 문안 기재(부속서 3)
관리	•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비치(p124 참조)** -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 - 서명권자 변경, 추가 하려는 때에는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 일자 및 사유 기재하여야 함 -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 일자 및 사유 각각 기재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기록, 관리(p124 참조)** -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서명한 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2절 FTA 원산지증명서

1. 기관 발급

(1)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국가별 증명 서식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5.2조 1)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제5.2조 3)
- **작성 언어** : 영어 (제5.2조 6)
- **발급 신청** : 수출자 (제5.2조 5)
- **발급 기관** : 대한민국 →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한정)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싱가포르 → 싱가포르 관세당국 (제5.2조 2)
- **포괄 증명** : 적용 불가, 단일원산지증명 적용 (제5.2조 7)
- **소급 발행** :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발행 (제5.2조 8)
  사유 →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
  수출자, 생산자 → C/O 발급일부터 5년 (제5.5조 1, 제5.5조 2)

유의사항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C/O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음
    (1)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2)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소급, 재발급**
  - 소급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급), 재발급 시 “CERTIFIED TRUE COPY”(진정등본)을 C/O 15란에 발급담당자가 표시
- **제3국 환적**
  - C/O 5란 또는 별지에 환적 국가, 장소 기재

원산지증명서 서식 (싱가포르)

<table>
<tr><td>1. Exporter :</td><td colspan="2" rowspan="3">REPUBLIC OF SINGAPOR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NO.
NO UNAUTHORIZED ADDITION/ALTERATION MAY BE MADE TO THIS CERTIFICATE</td></tr>
<tr><td>2. Consignee :</td></tr>
<tr><td>3. Departure Date:</td></tr>
<tr><td>4. Vessel's Name/Flight No. :</td><td colspan="2" rowspan="4">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We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and statements provided in this Certificate are true and correct.
Signature :
Name :
Designation : Stamp
Date :</td></tr>
<tr><td>5. Port of Discharge :</td></tr>
<tr><td>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td></tr>
<tr><td>7. Country of Origin of Goods :</td></tr>
<tr><td>9. Marks & Numbers</td><td>10. No. &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
(include brand names if necessary)
HS Subheading :
Origin Criterion :</td><td>11. Quantity & Unit</td></tr>
<tr><td colspan="3">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We hereby certify that evidence has been produced to satisfy us that the goods specifi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7.</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작성 요령		
번호	기재 항목	기재 요령
1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중앙등록번호(Central Registration Number), 성명, 주소를 적습니다. 중앙등록번호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수출입업체에 발급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Consignee(수하인)	수입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만이나 공항을 출항한 날짜를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 (선명/편명)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양륙항)	물품이 하선이나 하기 될 최종 목적(도착)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환적 되는 경우, 운송경로에 대한 추가 기재사항들은 10번 란이나 별지에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국)	최종 목적국은 "한국(Korea)"으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 of Goods (물품의 원산지)	원산지는 "싱가포르(Singapore)"로 적습니다.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 신고)	수출자의 서명을 적습니다.
9	Marks & Numbers (표시 및 일련번호)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10	Number &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포장 개수 및 종류, 품명)	다음 사항을 적습니다. - 물품의 품명(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물품에 대한 HS 6단위 품목번호 -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 • A : 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 • B : HS Changed (세번변경기준) • C : Value Added Contents (부가가치기준) • D : Specific Process(Mixing) (특정공정기준)
11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물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등)를 적습니다.
12	Certifica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증명서 발급기관)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서명하고, 싱가포르 관세당국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Certificate Reference Number (증명서 발급번호)		모든 증명서에는 싱가포르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 (한국)

<table>
<tr><td colspan="3">1. Exporter

2. Importer</td><td colspan="3">Reference No. :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td></tr>
<tr><td colspan="3">3. Departure Date :</td><td colspan="3">4. Vessel's Name/Flight No :</td></tr>
<tr><td colspan="6">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td></tr>
<tr><td colspan="3">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td><td colspan="3">7. Country of Origin :</td></tr>
<tr><td>8. Item Number</td><td>9. Description of Goods</td><td>10. HS No.</td><td>11. Marks & Numbers</td><td>12. Quantity & Unit</td><td>13. Origin Criterion</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_____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d colspan="3">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하역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이 하역되는 최종 항구를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 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란 또는 별지에 환적 국가와 환적 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적습니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 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 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 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 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 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 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 품목: "Others"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에 적습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 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 담당자가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작성 방법 5번 : 협정문 부속서 5C「싱가포르가 발급하는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주석」에 따름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양식 AK FORM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록 1 제5조 1)
- **유효 기간** : 발행한 날부터 12개월 (부록 1 제10조)
- **작성 언어** : 영어 (부록 1 제5조 1)
- **발급 신청** : 생산자, 수출자, 대리인 (부속서 3 부록 1 제4조 2)
- **발급 기관** : 라오스 → 상공회의소 / 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 → 상무부 / 베트남 → 산업무역부
  브루나이 → 외교통상부 / 싱가포르 → 세관
  인도네시아 → 통상부 / 캄보디아 → 상무부
  태국 → 상무부 / 필리핀 → 세관
  대한민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개성공단은 세관으로 한정)
  (부속서 3 제15조)
- **발급 시기** :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 포함)에 발급 (부록 1 제7조)
- **소급 발행** :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부록 1 제7조 4)
  사유 →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보관
  수출자, 생산자 →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부록 1 제13조)

유의사항

- **제3국 송품장 발급**
  - C/O 13란 "제3국 송품장"에 "✓"표시, 그리고 7란에 송장 발행 회사의 이름, 국가 정보 기재

- **제3국 전시 물품**
  -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13란 "전시"에 "✓" 표시. 단 부록 1 제20조에 명시된 사항 입증 필요

- **연결원산지증명서**
  - 중간 경유 당사국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최초 수출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AK-Form)를 근거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13란 "연결원산지증명서"에 "✓" 표시. 다만 부록 1 제7조의 2에 명시된 각호의 요건을 충족

- **수출물품이 다수**
  - HS 동일 품목이라도 물품이 다른 경우 품명, 규격, 품목번호, 원산지 기준을 물품별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양면인쇄**
  - C/O 뒷면에 Overleaf Notes를 ⅰ)흑백인쇄, ⅱ)미인쇄 또는 ⅲ)별지 인쇄 시 불인정
  - C/O 뒷면에 Overleaf Notes를 컬러로 양면인쇄 시 인정

- **C/O 유효기간 기산일**
  - 12란의 date는 기관에서 발급된 일자(유효기간 기산일, 초일불산입) 11란의 date는 기관에서 발급된 C/O 출력 후 서명권자의 서명일자를 의미

- **C/O 상의 송장 번호와 수입자 제출의 송장 번호가 상이한 경우**
  - 원칙 :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 번호 기재 (∵ 송장 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지며,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 가격에 의해 원산지 왜곡 방지 목적)
  - 허용 : C/O의 품명, 중량 등 기재 내역과 제출된 송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한 경우**
  -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 경우 인정
    (ex. CTC로 표기해야 하는 품목을 CTH 또는 CC라고 표기, “Specific Process”라고 표기해야 하는 물품을 “재단/봉제”와 같이 특정 공정을 기재(“CC+cutting” 또는 “CC+sewing” 등)하는 경우)

- **FOB 금액 기재 여부**
  - 원산지 기준이 RVC 기준이 아닌 경우 C/O 9란에 FOB 가격 기재 생략

- **소급, 재발급**
  -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급), 재발급 시 “CERTIFIED TRUE COPY”(진정등본)을 C/O 12란에 발급담당자가 표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_____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_____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KAFTA) :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 CONDITIONS :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A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Rules of Origin) of the KAFTA; and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3. ORIGIN CRITERIA :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AK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 "CTC" - "WO-AK" -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FREE-ON-BOARD (FOB) VALUE : The FOB value in Box 9 shall be reflected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The CO (Form AK) issued to and from Cambodia and Myanmar shall reflect the FOB value, regardless of the origin criteria used, for the next two (2) year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new arrangement.
7. HARMONIZED SYSTEM NUMBER :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8. EXPORTER :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9. FOR OFFICIAL USE :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10. THIRD COUNTRY INVOICING :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s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7.
11. EXHIBITIONS :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 nbox 2.
12.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1.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 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 개수·포장 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 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예 :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 재단 및 봉제 공정)	 CTC WO-AK RVC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캄보디아와 미얀마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이 서식 개정안 시행 후 2년 동안에는 사용된 원산지 기준과 관계없이 FOB 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 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 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일자 및 발급 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3) 한-인도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 증명 서식 (한-인도 FTA 협정문 제4.4조 1)
- **유효 기간** :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제4.5조 1)
- **작성 언어** : 영어 (제4.4조 1)
- **발급 신청** : 수출자, 생산자 (제4.3조 1)
- **발급 기관** : 대한민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개성공단은 세관으로 한정)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EIC)(제4.2조), 수산물수출개발원(MPEDA, '14.5.15일 지정),
  인도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16.3.30일 지정)
- **발급 시기** : 수출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선적일 포함) (제4.4조 4)
- **포괄 증명** : 적용 불가, 단일원산지증명 적용 (제4.5조 4)
- **소급 발행** :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발급 (제4.4조 4)
  사유 →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
  수출자, 생산자 → 발급일부터 5년 (제4.10조)
- **C/O 보유** : 한-인도 FTA는 타 협정과는 달리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 총 4부로 구성
  수입자 → 원본·제3부본, 발급기관 → 제2부본, 수출자 → 제4부본 보유

유의사항

- **소급, 재발급**
  - 소급발급시 "ISSUED RETROSPECTIVELY"(소급발급), 재발급시 "CERTIFIED TRUE COPY"(진정등본)을 C/O 6란에 발급담당자가 표시
- **제3국 송품장 발급**
  - 4란 "제3국 송품장"에 "✓" 표시 및 송장 발행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 기재

원산지증명서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_____
2. Producer(name, address, country)(optional)	
3. Importer(name, address, country)(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_____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조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 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 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일자 및 발급 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4)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 증명 서식 (한-중 FTA 협정문 제3.15조 1)
- **유효 기간** : 발급일부터 1년 (제3.15조 2)
- **작성 언어** : 영어 (제3.15조 2)
- **발급 신청** : 수출자, 생산자 (제3.15조 1)
- **발급 기관** : 대한민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개성공단은 세관으로 한정)
  중국 →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발급 시기** : 선적 이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선적일 미포함) (제3.15조 3)
- **포괄 증명** : 적용 불가, 단일원산지증명 적용 (제4.5조 4)
- **소급 발행** :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발급 (제3.15조 4)
  사유 →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자의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보관
  수출자, 생산자 → 발급된 날부터 3년 (제3.20조)

유의사항

- **한-중 FTA와 APTA 활용 여부**
  - 세율 비교 후 더 낮은 세율 적용 협정 활용 가능
- **홍콩, 마카오 생산 물품 협정 적용 여부**
  - 중국과는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한-중 FTA 특혜관세 혜택 불가
- **소급, 재발급**
  -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급)", 재발급 시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____dated____"(~일에 발급된 ~번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 문구를 C/O 5란에 발급 담당자가 표시
  - 기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되어야 함
- **C/O 원본은 1부만 인쇄되므로 훼손 시 반환 후 재발급**
- **1개의 C/O에 2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으며("을지"없음), 20개 초과 시 새로운 C/O 발급 신청**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4">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td><td colspan="3" rowspan="3">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td></tr>
<tr><td colspan="4">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td></tr>
<tr><td colspan="4">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td></tr>
<tr><td colspan="4">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td><td colspan="3">5. Remarks :</td></tr>
<tr><td>6. Item number (Max 20)</td><td>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td><td>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td><td>9. HS code (Six-digit code)</td><td>10. Origin criterion</td><td>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td><td>12. Number and date of invoice</td></tr>
<tr><td colspan="4">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d colspan="3">14. Certification :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증명서 번호 : 권한 있는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한국 또는 중국에 있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2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가 만든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된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제3란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제4란 운송 수단 및 경로를 작성하고, 출발일, 운송 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명시한다.

제5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이 이 란에 기재된다.증명서의 발행이 소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날짜)에 발행된 (번호)번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제6란 물품의 연번을 기재하며, 물품의 연번은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제7란 포장에 기록된 화인 및 숫자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 "이미지 또는 기호(I/S)" 를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화인이나 숫자 없음(N/M)"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제8란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명시한다.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물품명세 및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HS)의 물품명세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상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포장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

제9란 제8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 기재한다.

제10란 수출자는 제10란에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해당 상품이 제3.4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되고 정의되거나 또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WO
해당 상품이 그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 완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WP
해당 상품이 세번 변경 요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 공정 요건 또는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PSR
해당 상품이 제3.3조(특정 상품의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	OP

제11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이 이 난에 기입되어야 한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다.

제12란 송장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다.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가 이 란에 명시된다.

제13란 이 난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제14란 이 난은 권한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인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며, 소인을 찍는다.

※ 주 : 여기의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이 지침은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인쇄되거나 기재될 수 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량 단위 목록

연번	수량 단위	수량 단위 정의(영문)	수량 단위 정의(국문)	유사 표기 예시
1	2U	Pair	쌍, 켤레, 족	PA, PAI
2	BAG	Bag	가방	BG, BA
3	BLL	Barrel	배럴	BA, BAL
4	BOX	Box	박스	BX
5	BTL	Bottle	병	BO, BOT, BV
6	CAN	Can	캔	CA
7	CT	Carton	카톤, 케이스	CTN, CS, BR
8	DRM	Drum	드럼(drum)	DR, DM
9	DZ	Dozen	더즌(dozen, 12개)	DZN
10	EA	EA	개	
11	GLI	UK gallon	갤런(3.74581 dm3, US)	
12	GLL	US gallon	갤런(4.54062 dm3, UK)	
13	GR	Gram	그램	GRM
14	GT	Gross Ton/long ton	그로스 톤, 롱톤	
15	KG	㎏	킬로그램	KGS
16	KMT	Kilometer	킬로미터	KM, KT, KL
17	L	Liter	리터	Vl, LT, LTR
18	LBR	Pound	파운드	LB, PN
19	M	Meter	미터	MTR
20	M2	Square meters	square meters(제곱미터)	SM
21	M3	Cubic meter	세제곱미터	CBM
22	PC	Piece	피스(Piece)	PCS, PCE, PSC
23	PKG	Pack, Package	패키지(Package)	PK, PH
24	RL	Roll	롤(Roll), 코일(Coil)	RO, CL, CX, ROL, LAN
25	SET	Set	세트(Set)	ST
26	SF	Square feet	제곱피트	
27	SH	Sheet of Paper	매	
28	TNE	Metric ton	1,000㎏(Metric Ton)	MT, TN
29	TU	Thousand unit	천 개	
30	U	A unit	개, 본, 매, 두, 필, 대, 량, 기, 척, 착, 갑	UN, 1B, MR, NO, PL, OU
31	YD	Yard	야드	

※ 유의사항 1. 국·영문 수량 단위 정의를 참조하여 수량 단위 입력
2. 유사 표기 방법으로 예시된 수량 단위는 사용할 수 없음
3. 수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수량 단위가 없는 경우 예시된 수량 코드로 환산하여 입력
☞ 예시 : ① 100㎝ → 1M, ② 100Vl(10,000㎖) → 10L

(5)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 증명 서식 (한-베트남 FTA 협정문 제3.14조 1)
- 유효 기간 : 발급일 후 1년 (제3.16조 3)
- 작성 언어 : 영어 (제3.14조 3 다)
- 발급 신청 : 수출자, 생산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제3.14조 3)
- 발급 기관 : 대한민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개성공단은 세관으로 한정)
  베트남 → 산업무역부 (제3.15조)
- 발급 시기 : 선적 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선적일 포함) (제3.14조 4)
- 소급 발행 :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발급 (제3.14조 4)
  사유 →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보관
  수출자, 생산자 → 발급일부터 5년 (제3.18조)

유의사항

- **제3국 송품장 발급**
  - 13란 “Remarks”에 “Non-Party Invoicing”(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하며, 송장 발급 회사 상호, 국가명 등 기재
- **소급, 재발급**
  - 재발급시 “CERTIFIED TRUE COPY”(진정등본)를 C/O 12란에,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소급발급)를 발급 당국이 표시

원산지증명서 서식

ATTACHMENT 1

<table>
<tr><td colspan="6">Original(Duplicate/Triplicate)</td></tr>
<tr><td colspan="3">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td><td colspan="3" rowspan="2">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td></tr>
<tr><td colspan="3">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td></tr>
<tr><td colspan="3">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
Vessel's name/Aircraft etc. :
Port of Discharge</td><td colspan="3">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td></tr>
<tr><td>5. Item Number</td><td>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td><td>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td><td>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td><td>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td><td>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td></tr>
<tr><td colspan="3">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_____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d colspan="3">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r>
<tr><td colspan="6">13. Remarks</td></tr>
</table>

OVERLEAF NOTES

1. The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the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KVFTA) :

THE REPUBLIC OF KOREA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VFTA, goods sent to any Party listed above shall :
   (i)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comply with the transportation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Direct Transport) of the KVFTA; and
   (iii)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Chapter 3(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VFTA.
3. ORIGIN CRITERIA :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exporting part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 “CTC” - “WO-KV” -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e.g. “CTH + RVC 40%” - “Specific Processes”
(c) Goods satisfying Article 3.5	“Article 3.5”

4. EACH ARTICLE MUST QUALIFY :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FREE-ON-BOARD (FOB) VALUE : The FOB value in box 9 shall be reflected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7. HARMONIZED SYSTEM CODE : The Harmonized System code shall bet hat of the importing Party.
8. EXPORTER :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9. FOR OFFICIAL USE :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box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accorded.
10. REMARKS IN BOX 13 :
    (i)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non-party, “Non-Party Invoicing” should be recorded and such information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i) Other remarks should be recorded as necessary.

뒷면 주해

1.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KV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조건 :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상기에 명시된 어떠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한다.
   (2)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3.8조(직접 운송)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한다.
   (3)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에 이름이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어느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특정 공정	 - "CTC" - "WO-KV"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 예, "RVC 45%"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 예, "CTH + RVC 40%" - "특정 공정"
다. 제3.5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3.5조"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경우, 특히 관련성이 있다.
5. 상품명 :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FOB 가격을 반영한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수입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10. 제13란의 비고 :
    (1) 송장이 비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필요시 그 밖의 비고 사항들이 기록된다.

2. 자율 발급

(1)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 증명 서식 (한-칠레 FTA 협정문 제5.2조 1)
- **유효 기간** :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 (제5.2조 2)
- **작성 언어** : 영어 (제5.2조 3)
- **발급 신청** : 수출자 (제5.2조 6)
- **포괄 증명** : 적용 불가, 단일원산지증명 적용 (제5.2조 6))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 일자 이후 5년
  수출자, 생산자 → 서명일자로부터 5년 (제5.3조 4, 제5.4조 5)

유의사항

- **수출자 ≠ 생산자**
  -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C/O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음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지식,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자신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원산지신고서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출)
- **제3국 송품장 발급**
  - 9란에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 기재
- **작성 언어는 영어만 인정**
  - 협정상 타 언어로 작성된 C/O는 불인정 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스페인어로 작성된 C/O 요구 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을 설득할 필요 있음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 교환각서」(2017. 7. 1. 발효)**
  - 수출자는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5번란 품목번호(HS NO) 및 6번란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을 HS 2012 기준으로 작성할 것
    ※ 개정「부속서 4(원산지 규정)」참조하여 작성

원산지증명서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 (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Issuing Number (발급 번호)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 Unique Tax Number) 기재
2	Producer(생산자)	• 생산자 1명일 경우 :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 (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생산자를 모를 경우 : "UNKNOWN" 기재 • 비밀로 할 경우 :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Importer(수입자)	•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 "UNKNOWN"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 번호 기재 • 송품장 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번호 기재
5	HS No (품목 번호)	• 항목 4의 각 물품의 HS 번호 6단위까지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특혜 기준)	• 항목 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A :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 부가가치)	• 부가가치기준 적용 대상 물품으로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 "BD"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 "KR"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 "CL" 기재
9	Remarks (비고)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2) 한-EFTA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
  (한-EFTA FTA 협정문 부속서 I 제15조 1, 2)
- **유효 기간** :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부속서 I 제17조 4)
- **작성 언어** : 영어 (부속서 I 제15조 3)
-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부속서 I 제15조 4)
- **서류 보관** : 수입자 → 국내 법령에 따라 보관
  수출자, 생산자 → 최장 5년 (부속서 I 제21조)
- **참고사항** : 스위스 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

유의사항

-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범위**
  -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 서류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Delivery Note)에 작성 가능하며,
  - 반드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체약 당사국에서 발행되어야 함
  - 제3국 상업 서류 발행 시,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상업 서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서류만 유효**

  * 수출자 :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

  ** (예) 제3국에서 발행되는 송품장에 원산지신고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 서류(예 :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 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 **불인정 원산지신고서 사례**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체약 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 수출자가 백지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제3국 발행 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 참조번호 기재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C/O 처리 문제**
  - 원칙 : 한·EFTA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며, 세관 또는 상의 발행 C/O는 협정 및 특례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 불가
  - 예외 : 세관 또는 상의 발급 C/O에 한·EFTA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원산지 물품의 상세한 설명, 수출자의 서명 등 기타 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원산지신고서(부속서 I 의 부록3) 작성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3]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4]

Remarks [5]

1) 인증수출자번호 (비인증수출자 작성 시 생략 또는 공란)

2) 제품 원산지 : 해당 국가명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 (IS, NO, CH, KR) 기재
-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CH), LI 또는 Lichtenstein 모두 허용

3) 장소 및 일시 : 동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 시 생략 가능
- 체약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지명 기재 시 원산지신고서의 효력 부인

4) 수출자의 서명 및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
-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EFTA 국가별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

-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 사용

국가명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예시
아이슬란드	등록번호(4자리)-IS인증연도(2자리)	0023-IS10
노르웨이	국가명(2자리)/인증연도(2자리)-등록번호(9자리)	NO/16-123456789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인증번호(3자리 또는 4자리 또는 5자리)/ 인증년도(4자리)	123 또는 123/1998 1234 또는 1234/1998 12345 또는 12345/1998

(3) 한-EU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EU FTA 협정문 제15조 1)
- **유효 기간** :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제18조)
- **작성 언어** :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총 23) 중 선택 가능 (제16조 4)
- **발급 주체** :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탁송화물 수출자 (제16조 1)
- **소급 발행** :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발급 (제16조 6)
  - EU 2년, 한국 1년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관
  수출자, 생산자 → 5년 (제23조)

작성 유의사항

-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
  -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미산입
  -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원산지신고서 인정 범위**
  - 협정상 원산지신고서 문안만 인정 (원산지, 인증수출자번호만 표시한 경우 불인정)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적용 불가
    *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Delivery Note 등
- **원산지신고문안 수기 작성 시 : 잉크를 사용하여 신고 문안 전체를 대문자로 작성**
- **EU 역내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정 필수**
  - 역내 생산자의 제조 물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확인

- **EORI, VAT 관련 오류 사례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와 유사하여 유의할 필요)**
  -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EORI NO" 또는 "VAT NO" 조작·기재
    *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 Identification) : EU 관세국 단일 체계의 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역할)
    ** VAT (Value Added Tax) NO : EU 당사국의 법인(회사)이 등록·부여받는 번호

| EORI NO, VAT NO 확인 절차 (44~45page 참조) |

- 1단계 : EU에서 통보한 국가별 인증번호체계 일치 여부 확인
- 2단계 :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VAT 번호 해당 여부 확인
- 3단계 :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를 요구하여 유효성 확인

* 인증받은 일자, 특혜대상 국가에 한국 포함 여부 등

- **기타 오류 사례**
  - EU 인증수출자번호는 공란 및 “/”도 번호 체계의 일부이나 누락 또는 오기재
  - 인증번호체계의 “세관부호”, “지역코드”, “세관관서코드” 허위 기재
  - 운송업자가 제시한 예시 원산지신고 문구(타사의 인증번호 포함) 그대로 사용
  - 6천 유로 초과 수입 건 B/L 분할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
  - 개인이 임의의 번호 활용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 해외공급자가 타사의 인증번호로 원산지신고서 발급

EU 집행위 홈페이지 활용방법

- **EORI 번호 확인**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eori_validation.jsp?Lang=en 접속
  - 번호입력 후 Validate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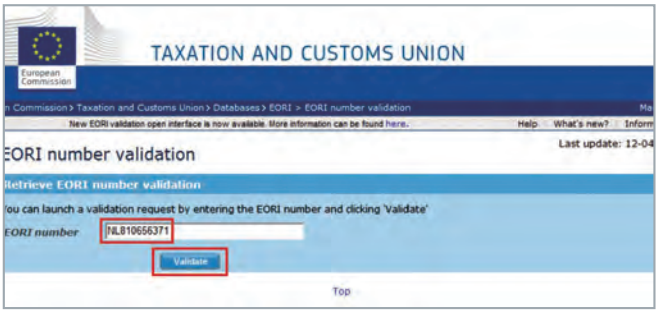

- **조회 결과 확인**

- **VAT 번호 확인**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vies/ 접속
  - Member State 및 번호입력 후 Verify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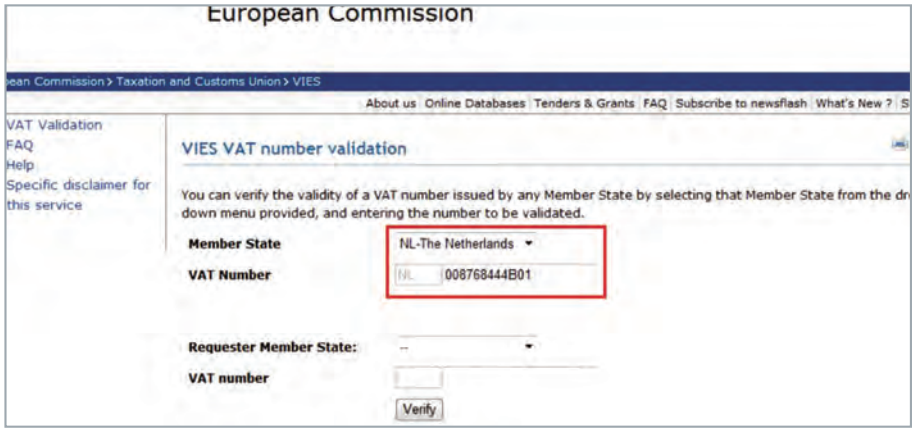

- **조회결과 확인**

원산지신고문안(부속서 3) 작성 요령

※ 원산지신고문안 예시 : 영어 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Place and date [3]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4]
Remarks [5]

1) 인증수출자번호 (49~50page 참조)
- 'customs authorisation No' 없이 '인증번호'만 기재해도 인정
  (예) ~document (BE 74) declares that,~
- 비인증수출자 작성 시, 괄호 안의 내용 생략 또는 공란

2) 제품 원산지
-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EUROPEAN UNION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Greece, England, Scotland, Wales
- EU 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표기 (47page 참조)
-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예) GR, GB, DE, IT (48page 참조)
- 'EU'표기, 'EC' 및 'European Community' 표기
-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 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 당사국의 형용사 표기 (예) Danish, German, Italian, French
- 안도라공국(ANDORRA, AD)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HS 25류~97류)과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도 인정
- '유럽연합당사자(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Ceu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 포함 시 'EU' 또는 'Ceuta and Meilia' 표기 인정 불가 'CM' 표기만 인정
- 원산지 표기 이외 다른 문구 추가 기재 시 '원산지 표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인정
  (예) EEC/Germany, Europe/FR/EU

3) 장소 및 일자 : 동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 시 생략 가능

* 해당 서류 발행 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생략 가능

* 단,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사전 제출 필요

| EU 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 |

언어 종류	'EU' 표기(원어)	약어 표기
스 페 인	Unión Europea	'UE'
프 랑 스	1'Union européenne	
이 탈 리 아	dell'Unione europea	
폴 란 드	Unii Europejskiej	
포 르 투 갈	União Europeia	
루 마 니 아	Uniunii Europene	
몰 타	tal-Unjoni Ewropea	
라 트 비 아	Eiropas Savienibas	'ES'
리 투 아 니 아	Europos SaWjungos	
그 리 스	Ευςωραϊκής Ένωσης	'EE'
불 가 리 아	Европейския съюз	'EC'

한-EU FTA 협정 당사자 목록

구분	당사자 명	ISO 코드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KR
유럽 연합 회원국	THE REPUBLIC OF AUSTRIA	AT
	THE KINGDOM OF BELGIUM	BE
	THE REPUBLIC OF BULGARIA	BG
	THE REPUBLIC OF CYPRUS	CY
	THE CZECH REPUBLIC	CZ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
	THE KINGDOM OF DENMARK	DK
	THE REPUBLIC OF ESTONIA	EE
	THE KINGDOM OF SPAIN	ES
	THE REPUBLIC OF FINLAND	FI
	THE FRENCH REPUBLIC	FR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B
	THE HELLENIC REPUBLIC	GR
	THE REPUBLIC OF CROATIA	HR
	THE REPUBLIC OF HUNGARY	HU
	IRELAND	IE
	THE ITALIAN REPUBLIC	IT
	THE REPUBLIC OF LITHUANIA	LT
	THE GRAND DUCHY OF LUXEMBURG	LU
	THE REPUBLIC OF LATVIA	LV
	MALTA	MT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NL
	THE REPUBLIC OF POLAND	PL
	THE PORTUGUESE REPUBLIC	PT
	ROMANIA	RO
	THE KINGDOM OF SWEDEN	SE
	THE REPUBLIC OF SLOVENIA	SI
	THE SLOVAK REPUBLIC	SK
	THE EUROPEAN UNION	

※ 안도라공국(ANDORRA, AD), 산마리노공화국(SAN MARINO, SM)
※ 세우타 및 멜리야(Ceuta and Meilia, CM)

|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18. 6. 7) |

- 인증번호 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을 구성
-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 사용

구분	예시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비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 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 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 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51/04/239/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 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 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 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번호체계 예시 정정(17, 8.2)
헝가리	HU123450N8000000 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 (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 National E :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 지역코드(2-3)/인증연도(2)	• 지역코드 : Milan, Rome, Naples, Genoa, Alexandria 경우 지역코드 2자리에 1자리 숫자(1, 2, 3)* 추가하여 구성 가능, * 1자리 숫자(Customs district 구분) • Rome, Naples, Genoa, Alexandria는 '1' 또는 '2' • Milan은 '1', '2', '3' 중 하나 (예) IT/032/MI2/11, IT/033/AL1/16, IT/034/GE2/16 • Malpensa 경우 MXP 3자리로 구성 (예) IT 002/MXP/13

구분	예시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비고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 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 숫자(1))/ 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 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갈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 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 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 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 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 인증연도(2)/인증번호(6)	* 신규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코드*(3)/인증번호(6)	* MÖ의 경우 2자리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신고서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원산지결정기준 부가규정)에 따른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동 의정서 부속서 2(원산지결정기준)에서 정한 원산지기준과 다른 원산지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물품별로 정해진 수출 쿼터가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선착순으로 운영됨

- 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

[참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 부속서 3

(4) 한-미국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ⅰ 양식 제한 없음(단,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 기재) /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2)
  ⅱ 권고 서식
- **유효 기간** : 발급된 날부터 4년 (제6.15조 5)
- **작성 언어** : 영어, 한국어 (제6.15조 6)
-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제6.15조)
- **포괄 증명** : 단일원산지증명 또는 증명일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 동일 상품 복수 선적(제6.15조 4)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
  수출자, 생산자 → 발급된 날로부터 5년 (제6.17조)

작성 유의사항

- **협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 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 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 필수기재 사항이 포함된 권고 서식 사용 가능 (54page 참조)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 기재 또는 상업 서류나 별도의 원산지증명서에 작성해도 적용 가능
  - 필수항목 이외의 정보라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한-미 FTA가 아닌 다른 종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

● **포괄원산지증명서 유효성**

- 포괄원산지 유효기간은 포괄증명기간 시작일부터 12개월이며, 유효기간 기산일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기준
-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

	원산지 포괄 증명 기간	발급 일자	협정 관세
ex.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 1. 1 ~ 2014. 12. 31	2014. 4. 1 또는 2015. 2. 1	적용
ex.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 1. 1 ~ 2014. 12. 31	2013. 12. 1	적용

-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원산지 포괄 증명 기간	선적 일자	수입신고일	협정 관세
ex. 포괄증명 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 1. 1 ~ 2014. 12. 31	2014. 12. 15	2015. 1. 15	적용
ex. 포괄증명 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 1. 1 ~ 2014. 12. 31	2013. 12. 15	2014. 1. 15	적용배제

한국 측 제공 권고 서식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의 8)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YYYY (년) MM (월) DD (일) YYYY (년) MM (월) DD (일) From : / / / To : / / / (부터) (까지)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3. Producer (생산자)	Name(성명)		4. Importer (수입자)	Name(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			Telephone(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 원산지증명 대상 물품 내역

Seria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 (특이사항)

I certify that :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작성자 성명) :	Title(직위) :	
YYYY MM DD (년) (월) (일) / / /	Telephone : (전화번호)	Fax : (팩스 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제공 권고 서식

CERTIFICATION OF ORIGIN

OMB Number: 1651-0117
Expiration Date: 02/28/2022

Korea
Click To Reset

US-Korea FTA (19 CFR 10 Subpart R)
www.cbp.gov/trade/free-trade-agreements/korea

BLANKET ONLY:

IMPORTER		**EXPORTER**	
Name:		**Name:**	
Address:		**Address:**	
State/Province: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Zip/Postal Code:**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Country:**	Korea
Phone:		**Phone:**	
Email:		**Email:**	

Additional Information / Notes

PRODUCER ☐ Same as Exporter

Name:	
Address:	
State/Province:	
Zip/Postal Code:	
Country:	Korea
Phone:	
Email:	

Criterion (HTSUS GN 33(b) / UKFTA Art. 6.1) Summarized:

Criterion 1 (33(b)(i) / Art. 6.1(a)): The good i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Korea or the United States.
Criterion 2 (33(b)(ii)(A)&(B) / Art. 6.1(b)(i)&(ii)): Non-originating material(s) undergo(es) prescribed tariff shift and/or satisfies RVC requirements.
Criterion 3 (33(b)(iii) / Art. 6.1(c)): Good is produced entirely in Korea or US from materials described in Criterion 1 or 2.

Product(s) for which preference is claimed ☐ **Blanket Period**

Invoice Date	Invoice #	HTSUS #	Description	Quantity	Origin	Criterion

☐ Click this box to generate a second sheet with additional line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click or hand sign)			
Name & Title:			
Date:		**Role:**	
Phone:			
Email:			

PAPERWORK REDUCTION ACT NOTICE: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117.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format is 2 hour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90 K Street, NE, 10th Floor, Washington DC 20229.

(5)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
  (한-터키 FTA 협정문 제16조, 제17조 3)
- **유효 기간** :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제18조 3)
- **작성 언어** : 영어 (제17조 3)
- **발급 주체** : 수출자 (제16조)
- **소급 발행** :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자사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발급 (제17조 5)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관
  수출자, 생산자 → 5년 (제22조)

유의사항

-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
  -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원산지신고문안 수기 작성 시 : 잉크를 사용하여 신고 문안 전체를 대문자로 작성

한-터키 FTA 자율 발급 원산지신고문안(부속서 3) 작성 요령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_____ [1] preferential origin.

_____ Place and date _____ [2]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3]

1) 제품 원산지 : 해당 국가명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 (KR, TR) 기재
2) 장소 및 일자 : 동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 시 생략 가능
   - 해당 서류 발행 일자와 원산지신고서 작성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재
3)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서 정하는 물품은 선착순으로 수출입 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아래의 문구를 포함하여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야 함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 **대상 물품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일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연간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	200 메트릭톤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 메트릭톤
5510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6)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 증명 서식 (한-캐나다 FTA 협정문 제4.1조 1)
- **유효 기간** : 서명일 이후 2년 (제4.1조 6)
- **작성 언어** : 한국 → 한국어 또는 영어
  캐나다 → 영어 또는 불어 (제4.1조 2)
-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제4.1조 5)
- **포괄 증명** : 단일원산지증명 또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명시된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 (제4.1조 5)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간
  수출자, 생산자 → 서명된 날부터 5년 (제4.5조)

유의사항

- **포괄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포괄증명의 증명 시작일은 C/O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포괄증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 필요시 별지 사용**
- **생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C/O 3란에 “VARIOUS” 표시 및 5란에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 기재
-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길 원하는 경우**
  - C/O 3란에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 **7란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 작성 방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기재

원산지증명서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 / / YYYY MM DD To : / / YYYY MM DD
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Canada Free Trade Agreement.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Name :	Title :
Date : / / YYYY MM DD	Telephone : Fax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기재사항)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 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 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기재 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라고 적고, 제5란의 증명 물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기재 사항)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적어야 합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 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 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캐나다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2조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가호 1목·2목·3목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장, 제3.1조 나호, 부속서 3-가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부속서 3-가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에는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에는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예시: NO(1)]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B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C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이 부가가치 계산 방법으로 순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NC" 또는 거래가격이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TV"로 적습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순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계산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YYYY/MM/DD~YYYY/MM/DD)을 적어야 합니다.
10. 제10란에는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의 경우에는 "KR"을 적고,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의 경우에는 "CA"를 적습니다.
11. 제11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7) 한-뉴질랜드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ⅰ 송장이나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확인 문언 기재 또는
  ⅱ 권고 서식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제3.19조 2)
- **유효 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제3.19조 8)
- **작성 언어** : 영어 (제3.19조 4)
- **발급 주체** : 수출자, 생산자 (제3.19조 1, 7)
- **포괄 증명** : 단일원산지증명 또는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명시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동일한 상품의 복수 수입 (제3.19조 7)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 또는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긴 기간
  수출자, 생산자 → 서명일 후 5년 또는 당사국이 명시하는 더 긴 기간(제3.22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요령(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서류에 확인 문언 기재)

I [state name and position] being the [exporter] [producer] [producer and exporter] (insert only that which applies)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New Zealand] (insert only that which applies)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 :

Signature Date :

-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송장에 아래 정보 미기재 시 '비고(Observations)'란에 기재
  ①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⑥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⑦ 원산지신고서의 날짜
  ⑧ 제3.19조 (원산지의 증명) 제7항 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원산지증명서 서식

ORIGIN DECLARATION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Instructions on reverse)

Please Print or Typ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Reference No.	2. Blanket Period: From : / / YYYY MM DD To : / / YYYY MM DD
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Reference No.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 :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al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Name :	Title :
Date : YYYY MM DD / /	Telephone : Fax :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서 방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지침이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 획득의 목적상, 이 문서는 수출자가 읽기 쉽고 빠짐없이 작성하며, 신고 시 수입자가 소유한다. 이 문서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인쇄체로 쓰거나 타자로 친다. 추가 기재가 필요할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제2란 이 신고서가 12개월(포괄증명 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한국 또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을 다룰 경우, 이 난을 작성한다. '부터'는 신고서가 포괄 신고서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날은 이 신고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 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상품의 수입은 이 날짜 사이에 발생한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 (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바랄 경우, '요청에 따라 세관에 제공 가능함'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수용 가능하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각 상품의 물품명세를 제공한다. 물품명세는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물품명세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물품명세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선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 각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가능할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하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 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제5란에서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아래 규정된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기재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 주 :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각 상품은 아래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한다.

특혜 기준

A. 그 상품이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B.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재료는 제3.3조(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서 규정된 대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원산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C.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그 상품의 세번에 적용되는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그 규정은 세번 변경과 가치평가 간 선택을 포함할 수 있다. 그 상품은 또한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제1절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 상품이 부속서 3-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합의된 대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제8란 제5란에서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를 기재한다. 본인이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근거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신고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각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3.4조(역내가치포함비율)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뉴질랜드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KR',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NZ'를 기재한다)

제11란 이 난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 또는 상품들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이 신고서에 관하여 비고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 날짜를 기재한다.

제12란 이 난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날짜는 이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다.

(8)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양국 통일 증명 서식(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제 3.18조 2-다)
- **유효 기간** : 서명일 후 1년간 유효(제3.18조 6)
- **작성 언어** : 영어(제 3.18조 2-다)
- **발급 주체** : 수출자 또는 생산자(제 3.18조 2)
- **서류 보관** :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함(3.23조 2)

유의사항

- **수출자 ≠ 생산자(제3.18조 3)**
  -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C/O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음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나.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 협정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원산지 상품의 경우, 각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수락(제 3.18조 8)

원산지증명서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 Telephone(optional) : E-mail(optional) :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Name :	Title :
Date : YYYY MM DD / /	Telephone : Fax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2개월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 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 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될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선택기재)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제1란에 정의된 수입자의 성명,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 단위 및 고유의 참조 번호(송품장번호,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1조 가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 나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	협정 제3.1조 다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D	협정 제3.16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본인이 생산자일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닐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1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제9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 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협정 제3.3조 참조)
10. 제10란에는 원산지 국가명을 적습니다.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CO'를 적습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물품에 대해 품목 분류나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식별번호 및 발급 일자를 적습니다.
12. 제12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9)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및 발급 주체**

구분		발효 이후 5년간(16. 7. 이전)	발표 이후 6년부터(16. 8. 1~)
발급 형태		기관 또는 자율	자율
	기관 서식	원산지증명서(부록 4가-2)	
	자율 서식	원산지신고서 문안(부록 4가-2) ⇒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작성	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발급 주체	기관	한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페루 : 통상본부	
	자율	수출자 : 2천 달러 이하 인증수출자 : 2천 달러 이상	수출자(인증수출자 포함) 또는 생산자

- **유효 기간** : 발급일부터 1년 (제4.3조)
- **작성 언어** : 영어 (제4.1조 4·부속서 4가 규칙 2의 2·규칙 4의 4)
- **발급 신청** : 수출자 (제5.2조 6)
- **포괄 증명** : '16. 7월 이전 → 적용 불가, 단일원산지증명서
  '16. 8월 이후 → 단일원산지증명서 또는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 동일 상품 복수 선적 (제4.1조 5, 부속서 4가 규칙 2의 2)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
  수출자, 생산자 → 발급일부터 5년 (제4.6조, 부속서 4가 규칙 6)

유의사항

- **C/O 서명은 직접 자필 서명 권장**
  (※ 페루 일부 세관에서 전자서명 및 인장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

원산지증명서 서식('16. 8. 1부터 적용)

<table>
<tr><td colspan="6">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td></tr>
<tr><td colspan="2">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td><td colspan="4">2. Blanket Period :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td></tr>
<tr><td colspan="2">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

Telephone(optional) :
E-mail(optional) :</td><td colspan="4">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td></tr>
<tr><td>5. Description of Good(s)</td><td>6. HS Tariff Classification #</td><td>7. Origin Criterion</td><td>8. Producer</td><td>9. Value Test</td><td>10. Country of Origin</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11. Remarks :</td></tr>
<tr><td colspan="6">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td></tr>
<tr><td colspan="3">12. Authorized signature :</td><td colspan="3">Company :</td></tr>
<tr><td colspan="3">Name :</td><td colspan="3">Title :</td></tr>
<tr><td colspan="6">Date : YYYY MM DD / / Telephone : Fax :</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가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수출자 정보 :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2. 포괄 확인 기간 : 이 증명서가 12개월(포괄 확인 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페루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동일 물품이 여러 번에 거쳐 반복하여 선적되는 경우 작성합니다. "부터"는 증명서가 포괄 증명서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적용 가능한 날이며(증명서 서명일 보다 이전일 수 있음), "까지"는 포괄 확인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선적은 이 기간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3. 생산자 정보 : ○ 단일의 생산자일 경우, 해당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선택) 및 전자우편 주소(선택)를 기재합니다.
   ○ 다수의 생산자일 경우, "VARIOUS"로 기재하며, 제5란에 기재된 상품(들)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선택), 전자우편 주소(선택)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자 정보 :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국가 및 도시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5. 물품 명세 : ○ 각 물품의 물품 명세를 기재합니다. 물품 명세는 송품장 상의 품명 및 물품의 품목번호(HS No.)와 연계할 수 있게 충분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증명서가 단일 선적분에만 한정되는 경우, 해당 선적분의 각 물품 수량,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다만, 송품장 번호(선택) 및 단위(선택)는 기재 가능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다만,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각 물품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양식의 번호와 같은 고유의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6. 품목번호(HS No.) : 제5란에 기재된 각 상품에 대해 품목번호(HS No.)를 6단위(6-digit)까지 기재합니다.
7. 원산지결정기준 : ○ 제5란의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여 하나의 코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표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 제1항 가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조 제1항 다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D	해당 물품이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8. 생산자 : ○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작성자가 물품의 생산자인 경우 "YES"를 기재합니다. ○ 작성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기재하고 이 증명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합니다.
   (1) 물품이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 이외에)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9. 부가가치 산출 기준 : ○ 제5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산출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기재합니다. [참조 : 협정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
10. 원산지 : ○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페루로 수출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KR",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PE"를 기재합니다.
11. 비고 : 제5란에 기재된 물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의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인 경우와 같이 이 증명서와 관련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 사전심사 결정 물품일 경우, 사전심사 결정문 발급 당국, 발급번호 및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협정 제3.7조 (최소 허용 수준)이 적용되는 경우
12. 서명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합니다. 다만, 날짜는 해당 증명서가 작성·서명된 날입니다.
    참조 : 작성 방법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며, 인쇄 시 해당 증명서만 출력합니다.

(10) 한-중미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통일 증명 서식(한-중미 FTA 협정문 제3.17조 2)
- **유효 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제3.19조)
- **작성 언어** : 영어(제3.17조 4)
- **발급 주체**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서명(제3.17조 5)
- **포괄증명** :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제3.17조 6)
- **서류 보관**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관(제3.22조 2)

협정 발효

- **온두라스, 니카라과** : 2019. 10. 1.
- **코스타리카** : 2019. 11. 1.
- **엘살바도르** : 2020. 1. 1.
- **파나마** : 미발효

원산지증명서 서식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optional) : E-mail :	2. Blanket Period: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s'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E-mail :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 Telephone : Fax : E-mail :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Origin Criterion	8. Producer	9. RVC	10. Country of Origin

11. Remarks :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	Company :
Name :	Title :
Date : YYYY MM DD / /	Telephone : Fax(optional) :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제2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포괄증명 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 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선적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란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제5란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상업 송장에 기재된 송장번호를 적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에 대하여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입니다.

제6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단위까지 적습니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습니다(택일한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A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협정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협정 제3.15조(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8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하여 본인이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 본인이 생산자가 아닌 경우, "NO"를 적고 이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아래 표에 따라 적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1)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제9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이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 [참조 : 협정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RVC))]

제10란 모든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적습니다 :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제11란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재료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에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 또한, 제3.6조(누적), 제3.7조(최소 허용 수준), 제3.8조(대체 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제3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 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12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 참조 : 이 작성 방법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므로, 뒤쪽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습니다.

(11)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 개요

- **작성 양식** :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영 FTA 협정문 제15조 1)
- **유효 기간** :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제18조 1)
- **작성 언어** :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영어, 한국어) 중 하나를 사용 (제16조 4)
- **발급 주체** : 인증수출자 또는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 **소급 발행** :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에 제시 (제16조 6) - 영국 2년, 한국 1년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관 (제23조 2)
  수출자, 생산자 → 5년 (제23조 1)

작성 유의사항(의정서 제15조 및 부속서3, 규칙 제15조7항 및 별표 20의2)

- 원산지신고서는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부속서 3에 규정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_____ [3] (Place and date) _____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국문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6천 유로 초과 물품 :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금액은 FTA포털에 별도 게시
  - 6천유로 초과여부는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운송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송품장의 물품가액에 의하여 판단
    ▶ (원칙) 송품장의 물품가액 기준
    ▶ (예외) 단일탁송화물에 여러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서류에 표시된 물품가액 기준
- 6천 유로 이하 물품 : 인증수출자 또는 탁송화물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함

연간 쿼터적용 예외물량 적용 물품(의정서 부속서 2-가)

-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일정수량 한도(선착순)로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부속서 2-가 적용품목은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문구를 포함

"Derogation-Annex II(a) of Protocol..."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영국 관세당국이 변경된 인증번호 체계를 통보하는 경우 별도 공지

3. 기관 & 자율 발급

(1)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및 발급 주체** : 표준서식 또는 양식 제한 없음(단,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 기재)
  (한-호주 FTA 협정문 제3.15조 2, 제3.1조 6 1)

구분		한국	호주
발급 형태		자율	기관 또는 자율
	기관 서식		지정 서식
	자율 서식	표준서식 또는 양식 제한 없음(단, 협정에서 정한 필수항목 기재)	
발급 주체	기관		호주 상공회의소(ACCI), 호주 산업협회(AIG)
	자율	수출자, 생산자	

- **유효 기간** : 서명일/발급일 이후 2년 (제3.15조 6, 제3.16조 3)
- **작성 언어** : 영어 (제3.15조 2)
- **포괄 증명** : 단일원산지증명 또는 원산지증명서 유효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술된 상품의 복수 수입 (제3.15조 5)
- **서류 보관** : 수입자 → 수입일부터 5년
  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가 서명된 날부터 5년 (제3.22조)

유의사항

- **협정에서 정한 필수기재사항**
  ① 발급 번호, ② 수출자(연락처 포함), ③ 복수 선적 포괄증명 기간
  ④ 생산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⑤ 수입자(연락처 포함) *선택사항, ⑥ 물품 명세
  ⑦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6단위), ⑧ 특혜 기준, ⑨ 비고 *선택사항, ⑩ 서약
  ⑪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이름, 서명, 기업 또는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처, 그리고 발급 일자
- **포괄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포괄증명의 증명 시작일은 C/O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포괄증명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3">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1. Issuing Number :</td></tr>
<tr><td>2. Ex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td><td colspan="2">2. Blanket Period :

From : (DD / MM / YYYY) To : (DD / MM / YYYY)</td></tr>
<tr><td>4. Producer- Name and contact details(optional field) :</td><td colspan="2">5. Importer-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field) :</td></tr>
<tr><td>6.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invoice number or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 where appropriate) :</td><td>7. Harmonized System code (six digits) :</td><td>8. Preference criterion :</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9. Observations (optional field) :</td></tr>
<tr><td colspan="3">10. Declaration :
I certify that :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td></tr>
<tr><td colspan="2">11. Signature :</td><td>Company or Authorised Body</td></tr>
<tr><td colspan="2">Name :</td><td>Title :</td></tr>
<tr><td colspan="2">Date : YYYY / MM / DD</td><td>Contact details :</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호주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한정한다)이 명료하고 충분하게 작성해야 하며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증명서의 고유번호(발급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수출자의 성명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3. 제3란은 이 증명서가 제6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 기간을 적습니다. “FROM”은 증명서가 포괄증명 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TO”는 포괄증명 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제4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생산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5. 제5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수입자의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 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와 상업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 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 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호주와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방법	원산지결정기준
WO	협정 제3.1조 가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PE	협정 제3.1조 나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협정 제3.1조 다호에 따라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ther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9. 제9란에는 제6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거나 비당사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되는 경우 등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10. 제11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은 이 난을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관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 난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호주 상공회의소(ACCI,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2.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name, address and country)	**1. Certificate of Origin No.** **Form KAFTA**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KAFTA)**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AUSTRALIA**
4. Producer, including contact details (optional)	
5. Goods Consigned to (Importer's/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Blanket Period for Multiple Shipments** **This Certificate is applicable to a single shipment only.**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AFTA**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Customs Official of the Importing Country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if known) **Shipment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Loading:** **Port of Destination:**	

6. Description of each good; including quantity (or unit of measurement), series number, and any other unique reference numbers where applicable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for each good**	**7. Harmonized System Code (6 digits - for each good)**	**8. Preference Criterion (WO, PE, PSR or Other - for each good)**
9. Observations (optional)			☐ ***De Minimis***

10.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 am the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_____(exporter)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The goods originate in _____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ustrali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

Signature of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exporter

.....

Printed name of authorised representative of exporter

.....

Company name & telephone/ email address

.....

Date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Level 3 Commerce House, 24 Brisbane Avenue, Barton A.C.T. 2600 Australia
Telephone International (+612) 6273 2311 – Local (02) 6273 2311
ABN 85 008 391 795
Authorised to issue Certificates of Origin by the Govern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This form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5 (v.2)

Document not certified unless authorised seal and signature appear in the space below.

.....

Place and date, name and signature of issuing officer,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Body

호주 산업협회(AIG,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서식

EXPORTER – Name and contact details	CERTIFICATE No. EXPORTERS REFERENCE
(Optional) Producer – name and contact details	(Optional) Importer – name and contact details.

AUSTRALIAN INDUSTRY GROUP

AUSTRALIAN INDUSTRY GROUP
20 Queens Road
MELBOURNE VICTORIA 3004 AUSTRALIA
T: +61 (0)3 9867 0111 F: -61 (0)3 9867 0157

The Australian Chamber of Manufactures has merged with the MTIA to form the Australian Industry Group

KOREA - 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BLANKET PERIOD (Optional) For multiple shipments.	FROM (DD/MM/YYYY)	TO (DD/MM/YYYY)

HARMONIZED SYSTEM CODE (SIX DIGITS)	PREFERENCE CRITERION	DESCRIPTION OF GOOD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Australi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ED: .....

COMPANY: .....

This Certificate is based on the information supplied to the Designated Issuing Authority by the Consignor and it is not to be taken as amounting to a warranty or representation of fact by the Designated Authority or its servants The undersigned, duly authorised by the Designated Issuing Authority certifies on the basis of information supplied and to the best of his knowledge and belief that the goods designated above are of AUSTRALIAN origin, production or manufactur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Australia – Korea Free Trade Agreement.

NAME OF AUTHORISED OFFICER

SIGNATURE OF AUTHORISED OFFICER

TITLE

DATE

3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1.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정의 및 적용 대상국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1976년 방콕협정에서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특혜 무역협정

적용	지역	대상국
한국에서 수출 한국으로 수입	아시아(5)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몽골 : 2021. 1. 1.부터 적용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통일 서식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 절차 제3조 1)
- **유효 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 (운영절차 제4조 1)
- **작성 언어** : 영어 (운영절차 제3조 1)
- **발급 신청** : 수출자, 생산자 (운영절차 제2조 1)
- **발급 기관** : 수출참가국 정부가 지정한 당국 (운영절차 제1조 1)
- **발급 시기** :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운영절차 제4조 1)
- **서류 보관**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작성 유의사항

- **C/O 5란** : HS 6단위 기재
- **C/O 7란** : 작성 방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 **C/O 8란** : "E" CTH 기재('18. 7. 1.신설)
- **C/O 10란** : 송품장의 일자는 C/O의 승인 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함

● **제3국 송장**
- C/O와 송품장의 수출자 성명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 시 적용 가능
- 단, C/O 2란에 'To Order(주문용)' 기입 및 직접 운송 원칙 준수 필요

● **직접운송 원칙 : 다음 각 항의 경우 직접 운송으로 간주**
-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 또는
-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ⅰ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
  ⅱ 경유국에서 교역, 소비되지 않고,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서 장치
  ⅲ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기타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 이외의 어떤 작업도 행하지 않은 상품

● **비참가국 경유 시 필수 제출 서류**
-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11.8.4 이후 수입신고 물품에 적용)
- 수출참가국의 발행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및 기타 보충 서류
  ※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ex. 항공 운송)
- 단순 경유 사실 증빙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최초 수출국 운송업자 (운송 주선인 포함)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홍콩 국경 도착 시 제출하는 재화청단 및 홍콩 발행 항공화물운송장은 불인정

● **발급기관 : 수출국 지정 기관 원칙으로 수출자를 통해 확인 필요**

신규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중국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해관총서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국제 무역촉진 위원회
인도	EXPORT INSPECTION COUNCIL, 지역별 발급기관의 지사
스리랑카	DEPARTMENT OF COMMERCE, MINISTRY OF TRADE, COMMERCE
방글라데시	EXPORT PROMOTION BUREAU
라오스	DEPARTMENT OF FOREIGN TRADE, MINISTRY OF COMMERCE TRADE SERVICE OF PROVINCE

AP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품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호	품명	원산지 기준
2201	음료·주류·식초	CTH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광물성 연료	CTH
2852	무기화합물	CTH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2913, 2914, 2915,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유기화학품	CTH
3002, 3006	의료용품	CTH
3817	혼합알킬벤젠	CTH
3901, 3902, 3903, 3904, 3905, 3906	플라스틱과 그 제품	CTH
3916, 3917, 3918, 3919, 3920, 3921, 3922, 3923, 3924, 3925, 3926	플라스틱과 그 제품	CTH
4002	합성고무	CTH(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CTH
6801, 6802, 6803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CTH
7201, 7202, 7203, 7204, 7205, 7206, 7218, 7224	철강	CTH
7307, 7308, 7309, 7310, 7311, 7312, 7313, 7314, 7315, 7316,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7325, 7326	철강의 제품	CTH
7401, 7402, 7403, 7404, 7405, 7406, 7407, 7408, 7409, 7410, 7411, 7412, 7413, 7415, 7418, 7419	구리와 그 제품	CTH+
7501, 7502, 7503, 7504, 7505, 7506, 7507, 7508	니켈과 그 제품	CTH
7601, 7602,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7610, 7611, 7612, 7613, 7614, 7615, 7616	알루미늄과 그 제품	CTH
7801, 7802, 7804, 7806	납과 그 제품	CTH
7901, 7902, 7903, 7904, 7905, 7907	아연과 그 제품	CTH
8001, 8002, 8003, 8007	주석과 그 제품	CTH
8536	전기기기	CTH
9619, 9620	잡품	CTH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6">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td></tr>
<tr><td colspan="3">1. Goods consigned from :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td><td colspan="3">Reference No. :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_____(Country)</td></tr>
<tr><td colspan="3">2. Goods consigned to :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td><td colspan="3">3. For Official Use</td></tr>
<tr><td colspan="6">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 (as far as known)</td></tr>
<tr><td>5. Tariff item number :</td><td>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td><td>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td><td>8.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td><td>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td><td>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td></tr>
<tr><td colspan="3">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d colspan="3">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Ⅰ. 일반 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상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Ⅱ. "란" 기재 방법건

제1란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2란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제3란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제4란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제5란 세번

개별품목의 HS 6단위를 표기한다.

제6란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제7란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상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상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8란 원산지 기준

특혜 상품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상품은 제3조 또는 제4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완전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 "B" 50%)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뒤에는 협약가입 수출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C" 60%)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4. 제3조 나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E"를 기재한다. "E" 뒤에는 원산지 기준을 기재한다 (예 :"E" CTH)

제9란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원산지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제10란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제11란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제12란 증명

증명기관이 이란에 증명한다.

2.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정의 및 적용 대상국

- ‘GATT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로 개발도상국 간 통상 확대 및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GATT 체제 하에 체결한 제도 (수입 시 사용)

적용	지역	대상국
한국으로 수입	아시아·오세아니아(13)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1],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바누아투[2], 솔로몬제도[3],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33)	앙골라[4],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5],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1)	아이티

주 : 1) 부탄 : 2023년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2) 바누아투 : 2020년 12월 4일까지 적용한다.
3) 솔로몬제도 : 2024년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4) 앙골라 : 2021년 2월 11일까지 적용한다.
5) 상투메프린시페 : 2024년 12월 12일까지 적용한다.

유의사항

- **직접 운송 : 직접 운송이 원칙이나 제3국 경유 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
  -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된 경우
  -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 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 **발급기관**
  - 수출자를 통해 수출국 정부 또는 지정 기관의 발행 여부 확인 필요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3">1. Exporter(business name, address, country)</td><td colspan="3" rowspan="2">Reference No. :

Certificate of Origin for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td></tr>
<tr><td colspan="3">2. Importer(business name, address, country)</td></tr>
<tr><td colspan="3">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td><td colspan="3">4. For Official Use</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5. HS code</td><td>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td><td>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td><td>8.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td><td>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td><td>10. Invoices No, and date</td></tr>
<tr><td colspan="3">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on Preferential Tariff for Least-Developed Countries from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td><td colspan="3">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1. 일반 조건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특혜품목이어야 합니다.

나. 대한민국의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송되는 각 물품은 각각 원산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봅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2)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 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2. 앞쪽 제8호 난의 기재 방법

특혜대상 품목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제5조 제1항)과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 (제5조 제2항)입니다.

가.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은 제8호 난에 A로 적습니다.

나.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은 제8호 난에 B로 적되, B 뒤에는 비수출국가로부터 구입한 원재료 가격이나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 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FOB)에 대한 백분율로 적습니다. (예 : B 40%)

3.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정의 및 적용 대상국

- '일반특혜관세'로 GSP 적용국으로 수출 시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수출 시 사용)

적용	지역	대상국
한국에서 수출	유럽(2)	벨라루스, 러시아
	오세아니아(1)	호주
	아시아(1)	카자흐스탄

원산지증명 개요

- **C/O 양식** : GSP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제22조)
- **작성 언어** : 영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 **발급 신청** : 수출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 **발급 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 **서류 보관**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3">1. Exporter(name, full address, country)
Exportateur(nom, adresse, pays)</td><td colspan="3" rowspan="2">Reference N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
Issued in _____(Country)
see notes overleaf</td></tr>
<tr><td colspan="3">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td></tr>
<tr><td colspan="3">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td><td colspan="3">4. For official use</td></tr>
<tr><td>5. Tariff Item number</td><td>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td><td>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td><td>8.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td><td>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td><td>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td></tr>
<tr><td colspan="3">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d colspan="3">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1. 일반 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국에 대한 GSP 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P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 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P 원산지 규정상의 운송 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 방법

특혜수혜 품목은 GSP 원산지 규정상 (완전생산기준) 또는 GSP 원산지 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부가가치기준) 또는 (누적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 또는 “P”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 또는 “Y”를 기재한다. “B” 뒤에는 우리나라 산이 아닌 원산지 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② 누적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GSP 공여국 및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수출품의 FOB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C” 60%)

③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제8란에 “W”를 기재한다.

④ 규정 특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4.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정의 및 적용 대상국

-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로 개발도상국 간 상호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 완화와 교역 촉진을 위한 특혜무역제도

적용	지역	대상국
한국에서 수출 한국으로 수입	아시아(12)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아메리카(15)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프리카(13)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중동(3)	이라크, 이집트, 이란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GSTP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제38조)
- **발급 신청** : 수출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 **발급 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 **서류 보관**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3">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td><td colspan="3" rowspan="2">Reference No.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td></tr>
<tr><td colspan="3">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td></tr>
<tr><td colspan="3">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td><td colspan="3">4. For official use</td></tr>
<tr><td>5. Tariff Item number</td><td>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td><td>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td><td>8. Origin criterion(see notes overleaf)</td><td>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td><td>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td></tr>
<tr><td colspan="3">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d colspan="3">12. Certificate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1. 일반 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수출국에 대한 GSTP 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2) GSTP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 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TP 원산지 규정상의 운송 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 방법

특혜수혜 품목은 GSTP 원산지 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 원산지 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한다.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GSTP 비참가국 및 원산지 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②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 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 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C” 60%)

③ 규정 제10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5. TNDC (GATT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정의 및 적용 대상국

- 'GATT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협상에 관한 의정서'로 개발도상국 간 통상 확대 및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GATT 체제 하에 체결한 제도

적용	지역	대상국
한국에서 수출 한국으로 수입	아시아(3)	터키, 파키스탄, 인도
	아메리카(3)	멕시코, 브라질, 칠레
	중동(2)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	튀니지아
	유럽(3)	그리스, 스페인, 유고슬라비아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GATT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제28조)
- **작성 언어** : 영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 **발급 신청** : 수출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 **발급 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 **서류 보관**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원산지증명서 서식

<table>
<tr><td colspan="3">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td><td colspan="3" rowspan="2">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td></tr>
<tr><td colspan="3">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td></tr>
<tr><td colspan="3">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td><td colspan="3">4. For official use</td></tr>
<tr><td>5. Tariff Item No.</td><td>6. Marks and number of package</td><td>7. No. & kind a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td><td>8. Origin riterion(see instructions overleaf)</td><td>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td><td>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td></tr>
<tr><td colspan="3">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d colspan="3">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r>
</table>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1.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preference are that goods sent to any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specified for those goods by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2. If the goods qualify under the origin criteria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e form as below:

Classification of goods by types of origin criteria	Indication to be made in Box 8 of the form
Goods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P
Goods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value added	Y followed by the value or materials imported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 Y less than 50%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a change in HS heading or other origin criteria	X followed by the HS heading No.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 X 97.06
Goods satisfying two origin criteria	Example : X 84.05 Y less than 40

3.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4. Language, description of goods, etc. In making out th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English, French or Spanish be used, taking into account the acceptability of the language in the importing country. Entries on the form should be typed or hand-written: in the latter case use ink and capital letters. Any unused space should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 impossible. Any alteration must be endorsed by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5.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ce. A declaration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prepared by the exporter of the goods and submitted in duplicate to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of the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will, if satisfied, certify the top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turn it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import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will itself keep the second copy duly complet 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4절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1. 개요 및 발급 절차

정의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관세 상 혜택은 없으나 그 물품의 원산지 또는 원산지표시, 불공정무역에 대한 구제조치(덤핑) 등의 목적으로 활용됨

원산지증명 개요

- **작성 양식** :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 제17조)
- **발급대상 품목** : 일반수출물품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제14조)
- **원산지 기준** : 해당 물품 수입국의 원산지 기준 우선 적용, 수입국이 원산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제15조)
- **발급 신청** : 수출화주, 대리인*, 제조자(제5조) * 대리인 → 단순 수출대행자는 신청 불가
- **발급 기관** :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제7조)
- **소급 발행** :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 신청 → 관련 근거 서류 제출 필요(제5조)
- **서류 보관** : 발급일로부터 2년(제9조)

신청 및 발급 절차(대한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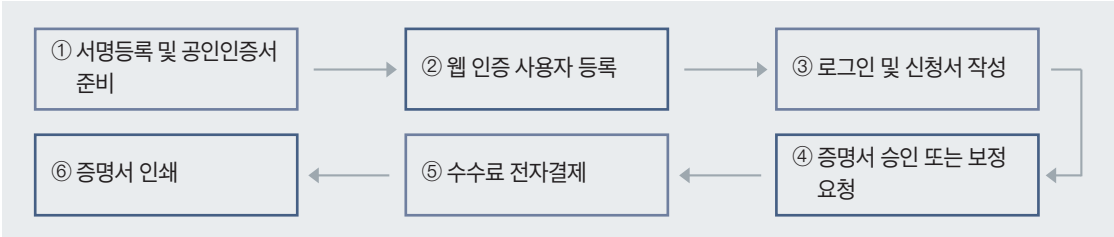

작성 유의사항

- 수출화주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원산지증명서 신청 요건
  ①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구분 B(대행수출자)에 기재된 사업자
  ② 수출대행 계약 관련 입증서류
  - 거래계약서, 신용장, P/O 등 무역계약 체결에 대한 증빙
    (심사기준) 수출대행자와 구매자의 명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구매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위임장 및 서약서 (매 신청마다 작성,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양식 참조)
  - 협조 공문 (최초 1회 제출하되,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의 변동 시 다시 제출)

원산지증명서 서식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Seoul, Republic of Korea
2.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3. Country of Origin
4. Transport details	5. Remarks
6.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7. Quantity
8.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as an authorized signatory,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were produced or manufactured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Signature) (Name)	9.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authority hereby certifies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originate in the country shown in box 3 to the best of its knowledge and belief. Authorized Signatory Certificate No.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원산지증명 등에 사용할 서명을 해당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증명번호가 날인된 원본을 복사하여 동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는 3년) 보관해야 합니다.

3. 발급받은 증명서의 변경 및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 신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첨부서류
   ① 정상적인 경우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 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②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에 한함)
   - 발급 일자의 소급 신청 : 정상 신청 시 첨부서류, NEGO 계산서나 관련 근거 서류
   - 발급 일자 실사인 및 2매 이상의 원본 요청 : 정상 신청 시 첨부서류, 관련 근거 서류(L/C 또는 계약서 사본)

5. 4항(Transport details)은 운송에 따른 특기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 선적항, 도착항, 선명, 선적일자)

6. 기재 내용이 많아 1장의 서식만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둘째 장부터는 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6항 하단부에 서식의 page 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예) To be continued/page 1, To be continued/page 2, ……, End of page/page #

7.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신청업체 서명권자의 서명과 서명자의 영문 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주 : 신청자가 신청서상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주요 교역국 비특혜 C/O 발급 규정 (9개 국가, 실질적 변형 기준)

※ 본 자료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명	비특혜 원산지 규정(실질적 변형 기준 중심)
미국	• **원산지 판정기관** - 관세청(1차 판정) → 국제무역법원(2차 판정) •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원칙 : 실질적 변형기준 채택** - '19CFR§134'는 연결공정 제품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을 제시 * '실질적 변형'이란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 **중간재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결정(미국 CBP의 301조 '원산지 사전심사' 결과)** 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name, character, or use)가 변화하지 않거나 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거나 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거나(pre-determined) 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지 않은 경우 ※ 개별품목과 원재료 및 공정과정이 유사한 품목에 대한 관세청(CBP) 결정사례* 검토 필요 (* https://rulings.cbp.gov/home)
중국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관세청(1차 판정) → 국제무역법원(2차 판정) •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원칙** - '비특혜원산지규칙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관한 규정' 및 '부속서'에 열거된 품목 → 해당되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동 '부속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세번 변경기준'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① 기본원칙 : 세번 변경기준(HS 4단위) ② 보충기준 : 부가가치기준(30%) 및 가공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 계산방식] $\frac{\text{공장도 가격(ex-work)} - \text{타 국가(지역)의 원산지 재료 가격}}{\text{공장도 가격(ex-work)}} \times 100\% \geq 30\%$

국가명	비특혜 원산지 규정(실질적 변형 기준 중심)
EU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EU 관세법, 관세법 위임규칙(UCC Delegated Regulation)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 HS2 단위 36개 류(類)에 대해 '관세법 위임규칙' 부속서 22-01에서 품목별원산지 기준을 열거 ※ 주로 의류 및 철강 제품에 집중 - 잔여기준(Residual Rules)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품목에 적용 ※ 생산 시 사용된 재료의 주된 비중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된 재료는 세부 품목에 따라 무게(weight) 또는 가치(value)로 판단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발생한 경우의 원산지결정 ① 공정이 마지막이고(last), ② 실질적이며(substantial), ③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economically-justified)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거나, 그 제작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영역)을 원산지로 간주
캐나다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국경관리청법, 관세법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 MFN 적용 목적 : 부가가치기준(RVC 50%) * 물품의 총 생산원가(The cost of production of the goods) 대비 50%이상이 MFN 수혜국 또는 캐나다에서 발생할 것. 또한 물품이 MFN 수혜국에서 최종 완성되어 그 완성된 형태로 캐나다로 수입될 것 * 50% 기준의 요건 계산 시 MFN 수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 발생한 생산원가(예: 캐나다산 재료비용)도 MFN 수혜국의 것으로 포함 가능 - MFN 적용 목적 : 부가가치기준(RVC 50%)

[NAFTA 국가 수입물품]	[NAFTA 이외 국가 수입물품]
완전생산기준, 세번 변경기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물질의 생산 등 적용	물품의 실질적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로 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의 주요 부분이 발생한 국가를 의미하고, 이를 판단할 때 국가별로 누적된 생산비용(재료비·노무비·제조간접비) 고려 가능

국가명	비특혜 원산지 규정(실질적 변형 기준 중심)
호주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관세법*, 관세율법, 관세규정 등 * 비특혜원산지 및 특혜원산지 관련규정 모두 통합적으로 규정, 원산지표시는 별도 법령에서 규정 •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관** -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 일반원산지 규정의 제・개정, 원산지를 포함한 관세행정 가이드라인과 지침 배포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① 비특혜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 해당 국가 ② 비특혜 국가에서 특정 자재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제조된 상품 : 제조 국가 ③ 비특혜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제조된 상품 : 실질적인 변형을 초래하여 물품에 새로운 특성을 주는 행위를 한 최종국가(부가가치기준) - 해당 비특혜 국가에서 상품 제조에 있어 최종 공정을 수행 - 허용되는 공장원가(Allowable factory cost)가 상품의 총 공장원가(Total factory cost)의 특정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 허용되는 공장원가 : 적격 재료비(Qualifying cost of material)만 포함 * 총 공장원가 : 적격 재료비(Qualifying cost of material)와 비적격 재료비(Non qualifying cost of material)를 모두 포함 ※ 적격 : 비특혜 국가인 상품의 제조국가와 호주를 포함
베트남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대외무역관리법 시행령(No. 31/2018/ND-CP) - 산업통상부가 공표하는 '제품별 규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가이드라인' (No. 05/2018/TT-BCT) •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관 : 산업무역부**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원칙** - 제품별 규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가이드라인에서 품목별 적용기준(세번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명시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 세번 변경기준 : HS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을 원칙으로 하며, 세번 변경기준인 경우 미소기준도 적용 **[미소기준 적용 원칙]** * (섬유・의류 이외의 상품) 요구되는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FOB) 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섬유 및 의류) 요구되는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FOB) 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가치기준 : 직접법 및 간접법 중 선택 가능 * 직접법 LVC = (원산지 재료의 가치/FOB) X 100% * 간접법 LVC = (FOB - 원산지 재료의 가치)/FOB X 100%

국가명	비특혜 원산지 규정(실질적 변형 기준 중심)
멕시코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관세법(제25조) 및 대외무역법 (제66조)에 따라 위임에 따라 경제부 장관이 제정한 '원산지 기준결정'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원칙** - 세번 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① '원산지기준 결정' 부속서 1의 부록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 지위를 부여 ②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품에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일으킨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 ③ 상기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품의 필수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재료의 원산지를 해당 제품의 원산지로 간주 * 재료 또는 구성품의 성질, 부피, 양, 무게, 가치, 물품의 용도 또는 다른 관련 요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 재료가 수행하는 기능 등을 고려
러시아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EAEU(유라시아경제위원회) 비특혜 원산지 규정 • **비특혜원산지 판정기관** - 연방 세관 및 연방 상공회의소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① 4단위 세번 변경기준 특정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해당 비원산지 재료가 물품의 공장도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지 않고, - 그 비원산지 재료가 물품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경우 ⇒ 해당 물품은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 ② 부가가치기준 해당 국가 내에서 가공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비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비원산지 재료비/공장인도조건 가격 X 100% ≤ 50% ③ 세번 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 오직 1개국의 재료만 사용한 경우(재료 생산국 ≠ 제품 생산국) ⇒ 생산에 사용된 그 재료의 원산지 국가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국가로 간주 - 2개국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 사용된 재료 중에 제품의 공장인도조건 가격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료의 원산지 국가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국가로 간주 * 이때 재료비는 생산국가로 수입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이며, 만약 관세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이 생산된 국가 내에서 해당 재료가 최초에 판매되었을 때에 확인되는 서류상 가격임

국가명	비특혜 원산지 규정(실질적 변형 기준 중심)
터키	• **비특혜원산지제도 관련규정** ◦ 관세법 제18조~제21조, 관세법 시행령 제33조~37조 및 시행규정 부속서 4~6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원칙** ◦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정이 이루질 경우, -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거나 또는 - 최종적이고(last), 실질적이며(substantial), 경제적으로 정당화되는(economically justified) 공정을 거쳐 생산의 중요한 단계가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간주 •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기준** ◦ 섬유 및 의류제품 : 원칙적으로 4단위 세번 변경기준 적용 - 단, 관세법 시행규정 부속서 5(섬유 및 의류)에 나열된 제품은 각 품목별로 제시된 기준 적용 ◦ 섬유 및 의류제품을 제외한 기타 제품 : 관세법 시행규정 부속서 6(기타제품)에서 규정, 각 물품의 원산지 기준 준수 필요 ◦ 부속서5 및 부속서 6에서 나열되지 않은 제품 : 관세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공정을 수행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

2

원산지 인증수출자

1절 개요

1. 도입 배경
2. 제도 정의
3. 종류 및 혜택

2절 운영

1. 인증 신청
2. 신청 준비 서류
3. 사후관리

1절 개요

1. 도입 배경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

EU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EU는 이미 '75년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FTA 체결국간 거래 단계에서 국경에서 행해지는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 이를 통해 국경에서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수출국의 관련 기간이 인증수출자를 부여하는 과정에 편입시킴으로써 수출자 및 통관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EU 국가별 인증수출자 자격 요건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한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생산공장 보유업체 제도	과거 인증수출자 제도	현행 인증수출자 제도
연혁	'07.06.01 시행	'08.07.15 개정	'11.06.30 개정
특징	• 한-아세안 FTA 대비 • 생산공장 보유 및 일정 요건 충족 수출자 (생산자)에 대하여 원산지 발급 절차 간소화	• 기존의 제도 요건 완화 •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 개편	• 한-EU FTA 대비 •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제도로 이원화 •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

2. 제도정의

누가	자유무역협정 체약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
언제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
어디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에 신청
왜·무엇을	FTA 특혜관세 적용 또는 C/O 발급 절차 간소화 혜택을 위해 원산지 관리능력 보유를 증명하는 인증수출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어떻게	UNI-PASS를 통한 전자서류 또는 방문을 통한 종이 서류 접수

3. 종류 및 혜택

종류

		과거 인증수출자 제도	현행 인증수출자 제도
최초	혜택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 받은 협정, HS 6단위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유효기간	• 5년	•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연장	제출	•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	
	기간	• 5년	
	기타		• 협정별, 품목별로 여러건 인증보유시 일괄 신청 가능 단,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30일 전까지 일괄 연장신청

혜택

	인증 전	인증 후
한-EU 한-영국	• 원산지제품의 총 가격이 6,000 유로 이하인 수출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원산지제품의 총 가격이 6,000 유로 초과 물품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작성 가능 • 서면확인서 제출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EFTA	•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서면확인서 제출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2절 운영

1. 인증 신청

(1) 근거

FTA 협정문	국내 법령
• 한-페루 FTA 부속서 4가 규칙 4, 5	• FTA 특례법 제 12조 • FTA 특례법 시행령 제 7조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한-EU FTA 의정서 제5부 제16, 17조	
• 한-EFTA FTA 제2부 제4절 제16조	

(2) 신청 전 구비요건

법규 위반 여부 확인

업체별	품목별
•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 7조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 요건 확인

※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기준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음 -

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단,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부터 2년)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에도 적용

*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

|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 이수 인정 기준 |

과목	내용	점수
자유무역협정 (FTA) 법령	• FTA 협정문 중 원산지 규정 •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 (최대 4점)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 결정 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 (최대 6점)
품목분류	• 품목분류 이론 •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 (최대 6점)
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제도 •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관리 실무	•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 업무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 전산 관리 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 (최대 6점)
원산지에 관한 조사	•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시간당 2점 (최대 6점)

②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당 2점(최대 6점)

*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 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외부 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 출처 :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인증수출자 고시') [별표]

(3) 심사기준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 증명 능력	•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 보유 여부(95~96)	• 협정별 HS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법규 준수	•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여부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 관리 여부	

※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2호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 서류 |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 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 원산지확인서·국내 제조 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 확보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해당 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 해당 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 품목분류, 원산지 기준 추가·변경 시 반영 기능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 서류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주요 수출 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 수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 확인서
	• 원산지 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1. 프로세스 적정 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 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 확인 - 원산지 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확인서·국내 제조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 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1. 프로세스 적정 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2. 서류작성 적정 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 체약 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매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 매뉴얼

※ 출처 : 인증수출자 고시 [별표 2]

(4) 업무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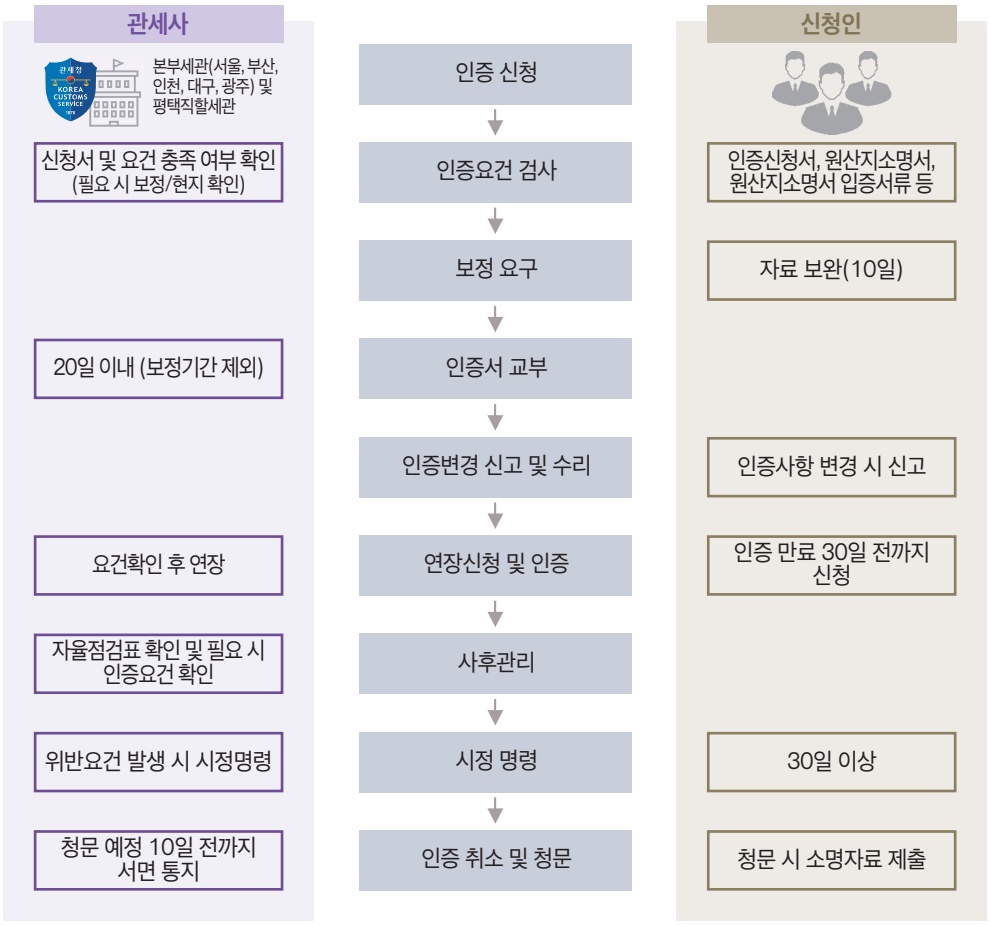

| 새로 인증받아야 하는 경우 |

	업체별	품목별
사유	• 개인사업자 :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 불인정 시	
		• 원산지결정기준/인증 물품 변경 등 인증사항의 실질적 변화

※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18조 제2항, 인증수출자고시 제15조

2. 신청 준비 서류

업체별	품목별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주요 수출(생산) 품목) • 소요 부품(자재) 명세서(BOM) • 제조 공정도 • 원산지(포괄) 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시 그 현황 자료, 전산시스템 미운영 시 원산지 관리 업무 매뉴얼	

| 주요 서식 설명 |

- 원산지소명서 (생산자/수출자 발행)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 물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의 산정, 제품의 HS 코드 및 그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등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
  ③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④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 시 필요한 서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 가능하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직접 제출 가능

- 원산지확인서 (국내 공급자 → 생산자/수출자)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또는 제품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증명 서류

- 국내제조확인서 (국내 재료 생산/공급자 → 생산자/수출자)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품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 증명 서류

(1) 인증신청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 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20 일

1. 신청 구분	신규인증 [√]	인증 유효기간 연장 [ ]

2. 신청인				
	상호	(한글) ㈜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영문) Busan center		
	주소	(한글) 부산시 중구 중장대로 20	대표자 성명	(한글) 김주원
		(영문) 20, Chung-jang-daero, Jung-gu, Busan, Korea		(영문) Kim Ju-won
	전화번호 051-123-1234		팩스번호 051-123-2345	
	전자우편주소 abc@abc.kr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3. 인증요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 증명 능력 보유 여부	[√]예 [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 여부	[ ]예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 의무 위반 여부	[ ]예 [√]아니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 또는 작성 · 발급 여부	[ ]예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 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1	8511.10	Spark Plug	한-EU	KR	CTH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1	김철수	과장	해외영업부	051-123-1234	051-123-2345	abc@abc.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제8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20년 11월 일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귀 하

신 청 인: 김 주 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보 및 국내 제조 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 세관 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20 일

1. 신청 구분	신규인증 [V]	인증 유효기간 연장 [ ]

2. 신청인				
	상호	(한글) ㈜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영문) Busan center		
	주소	(한글)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대표자 성명	(한글) 김주원
		(영문) 20, Chung-jang-daero, Jung-gu, Busan, Korea		(영문) Kim Ju-won
	전화번호 051-123-1234		팩스번호 051-123-2345	
	전자우편주소 abc@abc.kr		인증번호 ※ 세관에서 기재	

3. 인증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V]아니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 여부	[V]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V]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V]예 [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 물품

연번	품목번호(HS No. 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1	8511.10	Spark Plug	한-EU	KR	CTH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1	김철수	과장	해외영업부	051-123-1234	051-123-2345	abc@abc.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7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20년 11월 일

신 청 인: 김 주 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품목번호 6단위 기준)별 원산지소명서(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 제조 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원산지소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수출자 · 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성 명	김주원	전화/팩스번호	051-123-1234/123-2345
	주 소 (전자우편주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2. 생산자	상 호	㈜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성 명	김주원	전화/팩스번호	051-123-1234/123-2345
	주 소 (전자우편주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물품 명세

3. 품명/규격		Spark Plug	4. 품목번호(HS No.)	8511.1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 가 격(EXW) [V] 본선인도가격(FOB) [ ]	6. 원산지결정기준	CTH
	금 액	₩ 26,500/1PC	7. 자유무역협정 명칭	한-EU
8. 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14. 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	
1	Ceramic Insulator	8547.10	KR	1	₩6,300	㈜김해센터
2	Ceramic Spark-Plug Bodies	8547.10	미상	1	₩3,000	OOO(주)
3	Gasket	8547.10	미상	2	₩5,200	OOO
15.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6,3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8,200	
		합 계			₩14,500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16.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 ]예 [V]아니오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V]예 [ ]아니오
18.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	[ ]예 [V]아니오	(부가가치 비율 : %)	
19. 결합기준	[ ]예 [V]아니오	20. 특정공정 기준	[ ]예 [V]아니오
21. 역외가공기준	[ ]예 [V]아니오	22. 최소기준 적용 여부	[ ]예 [V]아니오
23. 누적기준 적용여부	[ ]예 [V]아니오	24. 직접운송 여부	[V]예 [ ]아니오
25. 기 타	[ ]예 [V]아니오	26. 원산지 결정	[V]충족 [ ]불충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 · 제출합니다.

작 성 자 : 김주원 (서명 또는 인)
직 위 : 대표이사
상호및주소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작 성 일 : 2020년 11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 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 생 산 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am○○ng ○○-1234 ; ○○ TV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품목번호(HS No.)	○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5. 물품 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 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 기재방법 가. 완전 생산 물품 – WO 나. 세번 변경 기준 –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 CC –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 CTH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BU – 역외산 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 (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 (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 공정 기준 – SP 바. 역외가공 기준(개성공단 생산 물품) – OP 사. 기타 기준 – Other ○ 결합 기준 기재 시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 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 변경 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 이상일 것과 특정 공정 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 BU 30% + SP
7. 자유무역협정 명칭	○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8. 주요 생산 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 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 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 품목번호(HS No.)	○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12. 원 산 지	○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 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 변경 기준 적용 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 공급자(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25. 원산지 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 [√]"로 기재합니다. ○ 19 ~ 23란에 "예 [√]"로 기재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6. 원산지 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기재합니다.

(3) 제조 공정도

생산 물품 제조·가공 공정도

수출자	상호 (주)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대표자 성명 김주원	주소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작성자	담당 부서 해외영업부	전화/팩스번호 051-620-6952 / 051-620-1118
	담당자 성명 김철수	전자우편주소 busansupport@customs.go.kr
신청 제품	제품명 Spark Plug	HS 6단위 8511.10
	모델규격 KPPC-1	적용협정 한-EU

가공공정도

재료 혼합 → 건조 → 몰딩 → 테스트 → 굽기 → 스틸 로딩 → 쉘 작업 → 퓨즈 부착 → 나사 작업 → 절연체 코팅 → 전극 삽입 → 터미널 스터드 삽입→ 실링 작업 → 윤활 작업 → 패널 링작업 → 결합 검사 → 간극 측정 → 완성 (순서대로 나열

※ 작성 시 유의사항

i) 제조공정별 Flow-chart 및 공정 사진 첨부
ii) 제조공정 중 외주 가공 시 외주 업체에 대한 설명
iii) 외주업체에서 가공 시 공정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사진 첨부
v) 공정별 역외 가공 유무 명시
vi) 전산시스템(ex. ERP) 입력시 작성 근거 기입

20XX. XX. XX

회사명판

대표직인

(4) 원산지(포괄)확인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1-1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김해센터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987-65-43210
	대표자 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이김해	전화번호(Tel) 055-620-6956 팩스번호(Fax) 055-620-6979
	주소(Address) 경남 김해시 공항로 1 전자우편주소(E-mail) def@def.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 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123-12-12345
	대표자 성명(Name of Representative) 김주원	전화번호(Tel) 051-123-1234 팩스번호(Fax) 051-123-2345
	주소(Address)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전자우편주소(E-mail) abc@abc.kr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 · 규격 [Description ·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 (년월일~년월일) [Blanket period (YYYY/MM/DD~YYYY/MM/DD)]
						충족 (Y)	미충족 (N)		
1	한-EU	8547.10	Ceramic insulator		MC45	[V]	[ ]	KR	20180101~20181231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이김해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부장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김해센터/ 경남 김해시 공항로 1
작 성 일(Date) : 2020년 11월 일 (YYYY/MM/DD)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 발급 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급하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3.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5.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6. 품목번호(HS No.)	○ 공급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7. 품명·규격	○ 공급 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8. 수량 및 단위	○ 원산지 포괄 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 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9. 원산지 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11. 원산지	○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07.01 – 2018.06.30 ※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 원산지 확인서로 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 생산 물품	– WO
나. 세번 변경 기준 – 2단위 세번 변경 기준 – 4단위 세번 변경 기준 –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 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 또는 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SP
마. 특정 공정 기준	– SP
바. 역외가공 기준(개성공단 생산 물품)	– OP
사. 기타 기준	– Other

(5) 소요 부품 및 제조원가 명세서

소요 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ill of materials)

수출자	상호 (주)부산센터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대표자 성명 김주원	주소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작성자	담당 부서 해외영업부	전화/팩스번호 051-620-6952 / 051-620-1118
	담당자 성명 김철수	전자우편주소 busansupport@customs.go.kr
신청 제품	제품명 Spark Plug	HS 6단위 8511.10
	모델규격 KPPC-1	적용협정 한-EU

품명(재료명)	세번 부호 (HS No)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원)	구성비	공급자	증빙서류	비고
Ceramic Insulator	8547.10	한국	1	6,300	6,300	44%	(주)김해센터	원산지(포괄) 확인서	국내공급
Ceramic Spark-plug Bodies	8547.10	일본	1	3,000	3,000	20%	(주)사상센터	원산지(포괄) 확인서	국내공급
Gasket	8547.10	베트남	2	2,600	5,200	36%	XXX Corporation	수입신고필증	수입
		역내산	₩ 6,300						
		역외산	₩ 8,200						
		합계	₩ 14,500						

* 원산지(포괄)확인서로 확인받지 못한 재료는 원산지를 '미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총원가											
제조원가											
직접원가					제조 간접비	판매 및 일반 관리비	+	목표이익	=	공장도가격 (EXW)	+	기타경비및 국내운송비	=	본선 인도가격 (FOB)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역내산 (VOM)	역외산 (VNM)													
6,300	8,200	2,500	1,000		1,500	2,000		5,000		26,500		500		27,000

협정	부가가치계산식	부가가치비율
아세안, 인도	RVC(공제법) = (FOB-비원산지재료 가격) / FOB × 100	69.6%
EU, EFTA	MC = (비원산지재료가격 / EXW) × 100	30.9%

* 완제품 1 Unit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 기준 시 작성

20XX. XX. XX

회사명판

대표직인

(6)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일련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1	김주원	(주)부산센터	대표이사	김주원	XX.XX.XX 담당자지정	

(7)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 번호	2. 작성 (서명)일	3. 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4. 품명	5. 품목번호 (HS No.)	6. 수량/ 금액	7. 원산지	8. 거래 상대방	9. 자유무역 협정명칭	10. 원산지 결정기준	11. 비고

작 성 방 법

항 목	작 성 내 용
1. 작성번호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 번호를 기재합니다.
2. 작성(서명)일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 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 번호화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4. 품명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5. 품목번호(HS No.)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6. 수량/금액	○ 해당 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원산지	○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8. 거래상대방	○ 작성 · 관리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 · 수입국명 –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 수출자 · 수출국명
9.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체약상대국이 칠레인 경우: 한–칠레 FTA
10.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수출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예)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등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11. 비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품장

(8)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서면 확인서

신청인	상호 ㈜ 부산센터	사업자번호 123-12-12345
	대표자성명 김주원	전화번호 051-123-1234
	전자우편 abc@abc.kr	팩스(FAX) 051-123-2345
	주 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 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 각호의 서류

2020 년 월 일

제 출 자 김 주 원 (인 또는 서명)

○ ○ **세관장** 귀 하

※ 동 서면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 자율 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참조 사이트

①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 좌측 상단 'FTA 활용제도'

② 좌측 '인증수출자 제도' ⋯› '업무 관련 서식 및 작성 요령' 탭 지정 후 서식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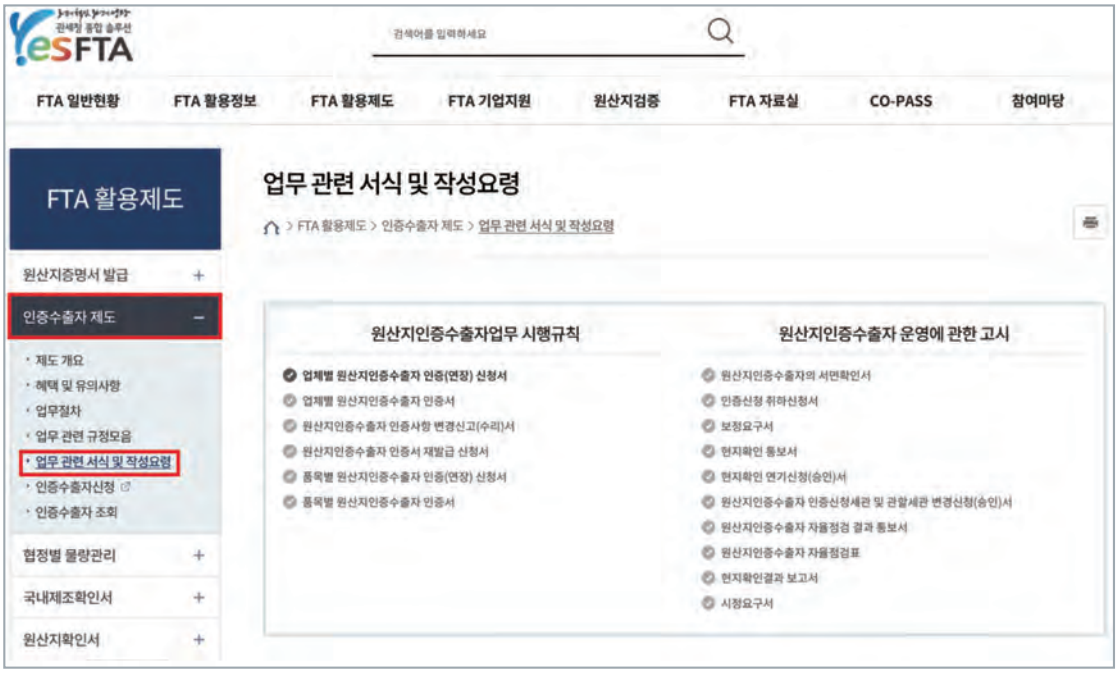

3. 사후관리

(1) 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

※ 자율점검 성실 인증수출자는 인증요건 심사 없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여 연장 승인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위임장 제출)

(2) 변경 신청

- 인증수출자 최초 신청 후 변경 사항* 발생 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할 세관에 지체 없이 신고
  -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원산지관리 전담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18조 제2항, 인증수출자 고시 제15조

(3) 관리 방식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정기)	세관장 선별관리(수시)
점검 시기	• 1회차 :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2회차 :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아래 대상 기준을 고려하여 서류 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
대상·기준	• 인증수출자 전체 단,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 점검 생략 • 원산지조사 결과 충족 판명 •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 인증 품목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생 • 인증 품목의 생산공정 또는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 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 • 세관장이 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 인수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
사후 조치	• 이상이 없을 시 30일 이내에 검토의견 회신,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간이심사 • 보완요구 필요 시 보정요구 절차 준용	• 현지 확인 시작 10일 전까지 업체 통보 (연기 : 시작 5일 전 기간, 사유 제출) ※ 원산지 조사 : 현지 확인에 불응·방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시

(4) 시정 명령 및 인증 취소

		업체별	품목별
시정 명령	의의	•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적 요건 보완 기회 부여	
	요건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관리 미실행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미실행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 미보유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비치·관리 미실행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미실행
	기간	• 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인증 취소	요건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 • 최근 2년간 서류 보관 의무 위반(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 또는 작성·발급	•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수출 물품(HS 6단위)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
	절차	• 청문 실시,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일 서면 통지	

※ 출처 : FTA 특례규칙 제17조 제9항 내지 제12항, 제18조 제4항, 제5항, 제7항, 인증수출자 제18조, 19조

3

서류 보관

1절 개요

1. 배경
2. 유의사항 및 보관 기간

2절 서류 보관 가이드

1. 공통사항
2. 원산지 기준별 보관 서류
3. 당사자별 보관 서류
4. FTA PASS를 활용한 서류 보관 방법 안내

1절 개요

1. 배경

- FTA는 先통관後검증 체제가 원칙이므로, 인증수출자 지정 여부에 상관 없이,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반드시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형사처벌 부과가 병행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 보관(Record Keeping)을 하여야 함
-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본 책자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물품 및 산업에 따라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2. 유의사항 및 보관 기간

유의사항

- **업무 단계의 순차성**
  - 업무 절차는 일반적으로 단계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증빙서류도 이에 따라 작성되는지 여부
    (ex. 특정 원재료의 입고일이, 그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한 제품의 출고일보다 다음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순차성에 어긋남)
- **품명·규격의 일치성**
  - 서류상의 품명·규격이 실물의 품명·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ex. A 물품 생산 시 실제는 a, b, c가 투입되는데 BOM에는 d, e, f가 투입되었다고 기재 시 이는 원산지 증빙 서류로서의 정합성이 없음)
- **생산 수량의 합리성**
  - 업체의 생산설비, 인원수 등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수출량이 적정한지 여부
    (ex. 월별 총 생산능력이 원단 100,000㎡인데, 미국 수출 수량은 200,000㎡이라면 제3국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원재료명세서가 실제 원재료 내역과 일치하는지와 BOM에 규격, 단가, 수량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원산지, HS 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거래 증빙의 일치성**
  - 각 거래 단계별 현황과 서류상 내역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거래가 없음에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거나 반대로 거래가 있었지만, 서류에는 기재되지 않았는지 여부
- **원재료 명세서(BOM)의 정확성**
  - 원재료명세서가 실제 원재료 내역과 일치하는지와 BOM에 규격, 단가, 수량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원산지, HS 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품목분류의 정확성**
  - 원산지결정기준 중 상품과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정확성 여부

보관 기간

	수출자·생산자		수입자	
협정	기산일	서류 보관 기간	기산일	서류 보관 기간
칠레	C/O 서명일	5년	수입일	5년
싱가포르	C/O 발급일	5년	수입일	5년
EFTA	(C/O 작성일)	최장 5년	수입국법에 따름	
아세안	C/O 발급일	3년 이상	수입국법에 따름	
인도	C/O 발급일	5년	수입일	5년
EU	(C/O 작성일)	5년	수입국법에 따름	
페루	C/O 발급일	5년	수입일	최소 5년
미국	C/O 발급일	5년	수입일	5년
터키	(C/O 작성일)	5년	수입국법에 따름	
호주	C/O 서명일	5년	수입일	
캐나다	C/O 서명일	5년	수입일	5년
중국	C/O 발급일	3년	수입국법에 따름	
뉴질랜드	수출자 : 서명일 또는 수출신고수리일 생산자 : 서명일 또는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일	5년	수입일	5년
베트남	C/O 발급일	5년	수입국법에 따름	
콜롬비아	C/O 발급일	5년	수입신고수리일	5년
중미	C/O 발급일	5년	수입국법에 따름	
영국	C/O 작성일	5년	수입국법에 따름	
FTA 관세 특례법	C/O 작성일 또는 발급일	5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의 다음 날	5년

2절 서류 보관 가이드

(본 가이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사안에 따라 다름을 유의해야 함)

1. 공통사항

신규	보관 서류
업체 개요	• 업체 현황, 소개서(ex.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등) • 본사·지사·계열 설명 자료 등
생산 능력	•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별 생산 물품 정보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등
원산지 관리 현황	•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원산지관리 매뉴얼 •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 자료 등(ex.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 약어표
물품 정보	• 물품 소개 자료 (ex.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 • 품목분류 근거자료 등(ex. 제조 공정도, 원재료 명세서, 용도 설명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등)
거래 관계	• 거래관계 증빙 자료(ex.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수출입신고서 등) • 운송경로 확인 서류 (ex. 선하증권, AWB 등) • 원산지증명서 등

2. 원산지 기준별 보관 서류

(1) 완전생산기준

	보관 서류
농산물	① 수출자 = 생산자 •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자료 (ex. 경작지등록자료, 조합원 확인 서류 등) • 생산능력 확인 자료 (ex.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② 수출자 ≠ 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 지역(수출자)까지의 운송 증빙자료, 거래 증빙 자료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 자료 등
	• 생산 공정 설명자료 (ex. 생산 공정도, 생산 설명서 등)
축산물	① 도축 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ex. 검역증 등)
	②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 자료 (ex. 목장등록자료, 조합원 확인 서류 등)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ex.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 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 자료 등
	• 생산 공정 설명 자료 (ex.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수산물	• 원양 생산 증빙 자료(ex.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확인서 등)
	• 근해 생산 증빙 자료 (ex. 어업허가증, 출하 확인 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등)
	• 생산 공정 설명 자료 (ex.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2) 세번변경기준

	보관 서류
원재료 구매 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ex.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대금 지급 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 (ex.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ex.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 (ex. 원산지확인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 (ex.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 시스템, 출력자료 등)
생산 단계	• 제조공정 설명 자료 (ex. 제조 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 이동표 등)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ex.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ex.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ERP 시스템 출력 자료 등) • 임가공 증빙 자료 (ex.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 지불 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 자료 (ex.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 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 자료 (ex. 임가공비 전표 등)
	• 미소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ex.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 중량이 기재된 BOM, 계산 내역 등)
판매 단계	• 물품의 판매 증빙 자료 (ex.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검역증, 대급 영수 증빙 등) • 물품의 원산지 증빙 자료(ex.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 소명서, 서명카드 등) • 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ex. 매출전표, 판매원장, ERP 시스템 출력 자료 등)

(3) 부가가치기준

	보관 서류
원재료 구매 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ex.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대금 지급 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 (ex.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ex.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 (ex. 원산지확인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 (ex.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 시스템, 출력자료 등)
생산 단계	• 제조공정 설명 자료 (ex. 제조 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 이동표 등)
	• 원재료 내역 증빙 자료 (ex.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ex. 원재료/제품 수불부, 제조 간접비·기타 경비·이윤 내역, ERP 시스템 출력 자료 등)
	• 임가공 증빙 자료 (ex.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 지불 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 자료 (ex.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 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 자료 (ex. 임가공비 전표 등)
판매 단계	• 물품의 판매 증빙 자료 (ex.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검역증, 대금 영수 증빙 등) •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 자료(ex.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 소명서, 서명카드 등) • 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ex. 매출전표, 판매원장, 판매 부대비용 전표, 표준원가정책, 실제원가 결산 자료, ERP 시스템 출력 자료 등)

(4) 가공공정기준

	보관 서류
원재료 구매 단계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ex. 거래명세표, 원재료 수불부, 발주서, 원단 재고 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 대장, 생산관리 대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 자료 (ex. 원산지증명서 등)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ex. 원산지확인서, 구매 관련 자료 등)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ex. 원산지확인서, 구매 관련 자료 등)
	• 재단·봉제(Cut and sew) 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 자료(ex. 원산지확인서, 구매 관련 자료 등)
생산 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ex. BOM 등)
	• 가공 공정별 설명 자료 (ex. 생산 공정도, 공정설명서, 공정 사진, 국내 제조 확인서, 작업 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 대장, 입출고·재고관리 대장 등)
	• 임가공 증빙 자료 (ex. 임가공거래 계약서, 작업 지시서, 임가공비 지불 증빙, 납품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
판매 단계	• 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ex.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대금 영수 증빙 등) • 물품의 원산지 증빙 자료(ex.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 소명서, 서명카드 등) • 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ex. 매출전표, 판매원장, ERP 시스템 출력 자료 등)

3. 당사자별 보관 서류

	보관 서류
수입자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 물품의 국제운송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출자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및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출신고필증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 출납·재고관리 대장 •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공급 또는 생산한 자 포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생산자	•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 수출자와의 물품공급 계약서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 재료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C/O 발급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 대장 • 원산지증명서 서명 카드 등

4. FTA PASS를 활용한 서류 보관 방법

서류 보관

① FTA PASS(http://edu.ftapass.or.kr/index.do)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우측 하단의 동영상 교육자료 등 다운로드 후 실습

FTA-PASS 실습

① FTA PASS(http://edu.ftapass.or.kr/index.do)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우측 하단의 동영상 교육자료 등 다운로드 후 실습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

Guidebook

4

관련 업무 지침

01.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02.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
0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04.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운영기준 개선
05. 한-인니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절차
06. [직접운송]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
07. [직접운송] FTA 협정 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08. [직접운송] 홍콩해관 APTA 중국발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09. [직접운송]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0. [직접운송] 철도복합운송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01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개정 2020. 8. 4.)

목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 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업무처리 지침

1. 협정 상대국과 수출 물품의 HS 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1)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020. 8. 4. 개정)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 서류는 당해 품목에 대한 협정 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 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 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 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재*하여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 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 제출 필요(2017. 6. 12. 신설)

   *(세관) '메모'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 사항'란

※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발급 번호 : 0000-00-0000000, 발급 코드 : 0000-0000) 시 상대국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 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 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 상대국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 상대국에서 HS 번호가 수출국 HS 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 상대국 HS 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 (2018. 7. 9. 신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 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 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2020. 8. 4. 개정)

2. 협정 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 번호가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 업무처리 요령(2020. 8. 4. 개정)

가. 'HS 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

1) 'HS 번호'가 원산지 증명 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 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

2) 관련 협정

가)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다) 터키와의 협정(한-터키 FTA)

라) <삭 제>(2018. 7. 9.)

나.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 항목인 경우

1) 원산지증명서의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2020. 8. 4. 개정)

2) 관련 협정

가)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한-아세안 FTA)

나) 미국과의 협정(한-미 FTA)

다) 칠레와의 협정(한-칠레 FTA)

라) 인도와의 협정(한-인도 CEFA)

마) 싱가포르와의 협정(한-싱가포르 FTA)

바) 중국과의 협정(한-중 FTA)

사) 베트남과의 협정(한-베트남 FTA)

아) 페루와의 협정(한-페루 FTA)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한-뉴질랜드 FTA)

차) 호주와의 협정(한-호주 FTA)

카) 캐나다와의 협정(한-캐나다 FTA)

타) 콜롬비아와의 협정(한-콜롬비아 FTA)

파) 중미와의 협정(한-중미 FTA,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적용) (2018. 7. 9. 신설)

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2018. 7. 9. 신설)

3) 다음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협정(특혜)관세 적용 등 처리(2020. 8. 4. 개정)

가)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정(특혜)관세 적용(2018. 7. 9., 2020. 8. 4. 개정)

※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단 근거
완전 생산 기준	완전 생산 기준 또는 역내 가치 발생 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이므로 원산지 제품에 해당
역내 가치 발생 기준 40%	역내 가치 발생 기준 35%	역내 가치 기준 35%를 초과하므로 원산지 제품에 해당
역내 가치 발생 기준 40%	(선택 기준) 역내 가치 발생 기준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역내 가치 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

나)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특혜)관세 적용. 다만, 세관장이 협정 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 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 조사 부서에 원산지 조사 의뢰(2018. 7. 9. 신설, 2020. 8. 4. 개정)

※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수입신고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	판단 근거
역내 가치 발생 기준 40%	(조합 기준) 역내 가치 발생 기준 40% 및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충족 여부 확인 불가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역내 가치 발생 기준 30%	역내 가치 발생 기준 40%	수입국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세번변경기준	완전 생산 기준	

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역내 가치 발생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제품에 해당하므로 'HS 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 처리

2) 적용 대상

가) <삭 제>(2018. 7. 9.)

나)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다)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 양허관세(TNDC)

3.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 업무처리 요령(2020. 8. 4. 개정)

가.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함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행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물품임이 확인된다면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2020. 8. 4. 개정)

※ 적용예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	송품장의 품명	처리 방법
Machinery Parts	Bolt, Nut	협정(특혜)관세 적용

시행 일자

- 2020. 8. 4.

02 1국 2개 이상 협정이 적용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

목적

- 하나의 국가와 두 개의 특혜관세 적용 협정이 발효된 경우*, 협정 간 세율 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로 사후적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예시 : 싱가포르(한-아세안 & 한-싱가포르 FTA), 베트남(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

적용 대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 이미 적용받은 협정과 다른 협정으로 동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 절차

- 관세법 제38조의 2 또는 제38조의 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 두 개 협정의 사후 재적용 절차_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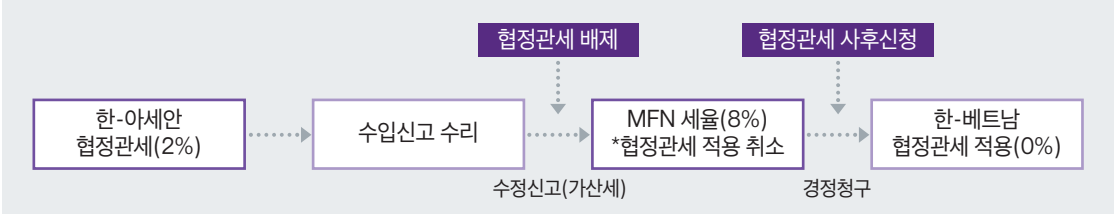

- (통보일) 2018. 8. 14.

03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배경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2차 개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APTA 원산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관련 규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

(1)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도입

- (기존) 완전 생산 기준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5% 이상) 및 역내 부가가치 누적기준(RVC 60% 이상)
- (추가 신설)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적용(부속서 2가)

  *철강, 금속품, 플라스틱, 합성고무 등 HS 4단위 품목 153개

  ※ 붙임 1 : 2차 개정으로 추가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품목
- 부속서 2가 품목(CTH 적용 품목)은 우선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하고, 역내 부가가치기준(RVC)을 순차 적용

(2) 불명확한 용어에 대해 주석 추가

- 제4조(원산지 누적)에서 누적의 '총함유량*'에 대한 주석 추가

  *이전 당사국의 영토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 가치(VOM1) + 완제품에 대한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토에서 획득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VOM2)

- 제5조(직접 운송)의 비당사국 경유 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주석 추가

  *경유국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서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되고 어떠한 수입 통관 절차의 진행이 없었던 상품

(3) 원산지증명서 기재 방법

- 제5란 세번

  - (현행) HS 4단위 기재 → (변경) HS 6단위 기재

- 제8란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E" CTH 기재(신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조치사항

- 세번은 개별 품목의 HS 6단위 표기
-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하는 경우 "E"를 기재(예시 : "E" CTH)

  ※ 붙임 2 : 아·태 협정 원산지증명서 및 작성 요령

시행 일자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 개정사항 발효일(2018. 7. 1.)

04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운영기준 개선

배경

- '정정 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정정 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대국에서 특혜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 지속 발생

C/O '정정 발급' 시 '새로운 발급번호' 생성·부여

*(기존) C/O '정정 및 재발급' 시 원본 C/O와 '동일한 발급번호' 부여
- 단, '재발급'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기존 발급번호 그대로 사용

▸ 정정·재발급 시 '발급번호' 운영기준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정정 발급	재발급	정정 발급	재발급
세관 상공회의소	기존 발급번호 사용		신규 발급번호 생성	현행과 동일 (기존 발급번호 사용)

세관 및 상의 C/O '참조코드' 운영기준 일원화

- 상공회의소도 세관과 동일하게 정정·재발급 시 모든 협정에 대해 새로운 '참조코드' 생성·부여되도록 개선

*(현행) 상의의 경우 한-베트남 FTA 정정 발급 시에만 참조코드 신규 생성

▸ 정정·재발급 시 '참조코드' 운영기준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기존		개선	
	정정 발급	재발급	정정 발급	재발급
세관	모든 협정 / 신규 생성		모든 협정 / 신규 생성	
상공회의소	모든 협정 / 기존 코드 (한-베 정정 발급 시만 신규 생성)			

시행일

- 2019. 11. 19.

05 한-인니 EODES 시행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절차

배경

- 2020. 2. 1.부터 한-인도네시아 간 EODES(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시행으로 양국 세관 당국에 수입 신고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하게 됨

우리나라 협정관세 적용 절차

[인니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방식]

- 인니 수출자는 ① 전자 또는 ② 종이 서류로 원산지증명서 선택 발급 가능
- 전자 방식을 이용할 경우에만 C/O 정보가 전자적으로 우리나라로 통보

[①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일반)]

- (C/O 정보 전자적 전송 경로) 인니 산업무역부 → 인니 INSW(싱글윈도우청) → 한국 관세청 → 한국 세관
- (C/O 통보 절차) 인니 수출자 → 한국 수입자
- (C/O 확인) 한국 수입자는 관세청 FTA-포털, CO-PASS에서 조회
- (수입 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 (특혜 부여) 한국 세관이 통관 시스템에서 인니 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내역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②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C/O를 종이 서류로 발급받은 경우(예외)]

- (C/O 발급) 인니 수입자가 인니 산업무역부로부터 C/O 발급
- (C/O 통보 절차) 인니 수출자 → 한국 수입자
- (수입 신고)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갑·을·병지) 작성 후 세관에 제출(전송)
- (특혜 부여) 한국 세관이 통관 시스템에서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 (참고)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

  - 체약 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요구 생략 가능

  * FTA 특례법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및 같은 고시 제18조 제1항 2호

인도네시아 협정관세 적용 절차

[일반적 절차]

① (C/O 정보 전자적 전송 경로) 한국 관세청 → 인니 INSW(싱글윈도우청) → 인니 관세청 → 인니 세관

② (C/O번호/발급일 통보 절차) 한국 수출자 → 인니 수입자

③ (C/O 확인) 인니 수입자는 INSW 웹사이트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 출력

④ (수입 신고) 인니 수입자가 수입 신고 시 C/O번호/발행일 입력

⑤ (특혜 부여) 인니 세관이 통관 시스템에서 전자 원산지증명서(e-From AK) 확인 후 특혜관세 부여 결정

[인도네시아 세관 통관 시스템(CEISA) 다운 또는 오류 시 절차]

① (인니 세관) 수입자 등에게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 제출 요구

② (인니 수입자) 익일 12시까지 INSW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또는 스캔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06 [직접운송]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 방법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 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입증 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공통) 하역, 재선적, 상품 보존 및 운송 필요 공정	전체 운송 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FTA 특혜	중국	○	지리·운송	거래·소비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일시 보관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결합) 운송 서류 등 (통과·환적 또는 보관·컨테이너 적출 시)	관세당국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 발행 서류 (보관·컨테이너 적출 시)	
	인도	○		거래·소비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세관 통제 서류	
	아세안		지리·운송	거래·소비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베트남		지리·운송	거래·소비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싱가포르	○			상자 포장, 포장과 재포장		세관 문서 사본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보 또는 상업 서류
	중미	○			재포장	단일 운송 서류, 통과 운송 서류	관세당국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 서류	수입국 세관을 만족시키는 서류
	페루	○		거래·소비	재포장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결합) 운송 서류 등 (경유·환적 또는 보관 시)	관세당국 또는 권한이 있는 기관 서류(보관 시)	
	칠레	○			상자 포장, 포장과 재포장	송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등		
	EU	○				단일 운송 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터키	○				단일 운송 서류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EFTA	○			탁송품 분리, 파이프라인 운송	요청 시 수입국 법령에 따름		
	콜롬비아	○		거래·소비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관세당국 발행 서류	환적 또는 보관 상황 증거
	뉴질랜드	○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적절한 서류		
	호주	○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보관			
	캐나다	○		거래·소비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분리			
	미국	○						
일반 특혜	APTA		지리·운송	교역·소비	하역, 재선적 및 보전 필요 공정	통과선하증권	직접운송을 증빙하는 서류	

*(한-아세안) "통과선하증권"은 물품이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 여정을 담고 있는 모든 운송 서류

국내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 서류

구분	협정	비당사국 경유 요건				대표적인 직접운송 입증 서류		
		세관 통제	사유	불인정	인정	전체 운송 경로	세관 통제	비조작
FTA 특혜		○	운송		운송, 하역, 선적, 포장 및 보전 필요 공정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일체	세관 통제 입증 서류	비조작 입증 서류
일반 특혜	APTA	○	지리·운송		하역, 재선적 및 보전 필요 공정	택일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 서류(예시)

구분	유형	예시
1	전체 운송 경로	- (통과) 선하증권 - 항공운송장 - 육상운송증 - 복합(결합) 운송 서류
2	세관 통제	-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 - 세관 발행 재수출확인증 - 세관 발행 보세구역 반출입 확인증 - 기타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비조작	

07 [직접운송] FTA 협정 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배경

- 최근 FTA 협정 적용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 간 직접운송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 단순 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필요

세관통제확인서류

① 중국 비가공증명서(상해해관만 발급, 단순 환적 증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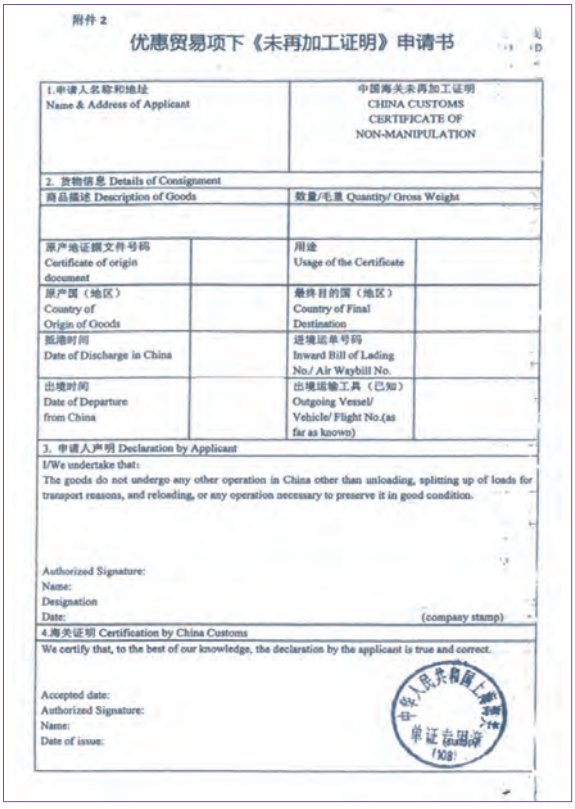

附件 2

优惠贸易项下《未再加工证明》申请书

1.申请人名称和地址 Name & Address of Applicant		中国海关未再加工证明 CHINA CUSTOMS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货物信息 Details of Consignment			
商品描述 Description of Goods		数量/毛重 Quantity/ Gross Weight	
原产地证据文件号码 Certificate of origin document		用途 Usage of the Certificate	
原产国（地区） Country of Origin of Goods		最终目的国（地区）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抵港时间 Date of Discharge in China		进境运单号码 In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	
出境时间 Date of Departure from China		出境运输工具（已知） 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as far as known)	

3. 申请人声明 Declaration by Applicant

I/We undertake that:

The goods do not undergo any other operation in China other than unloading, splitting up of loads for transport reasons, and reloading, or any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it in good condition.

Authoriz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company stamp)

4.海关证明 Certification by China Customs

W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is true and correct.

Accepted date:
Authorized Signature:
Name:
Date of issue:

② 중국 재수출증명서 (전국 발급, 단순 환적 증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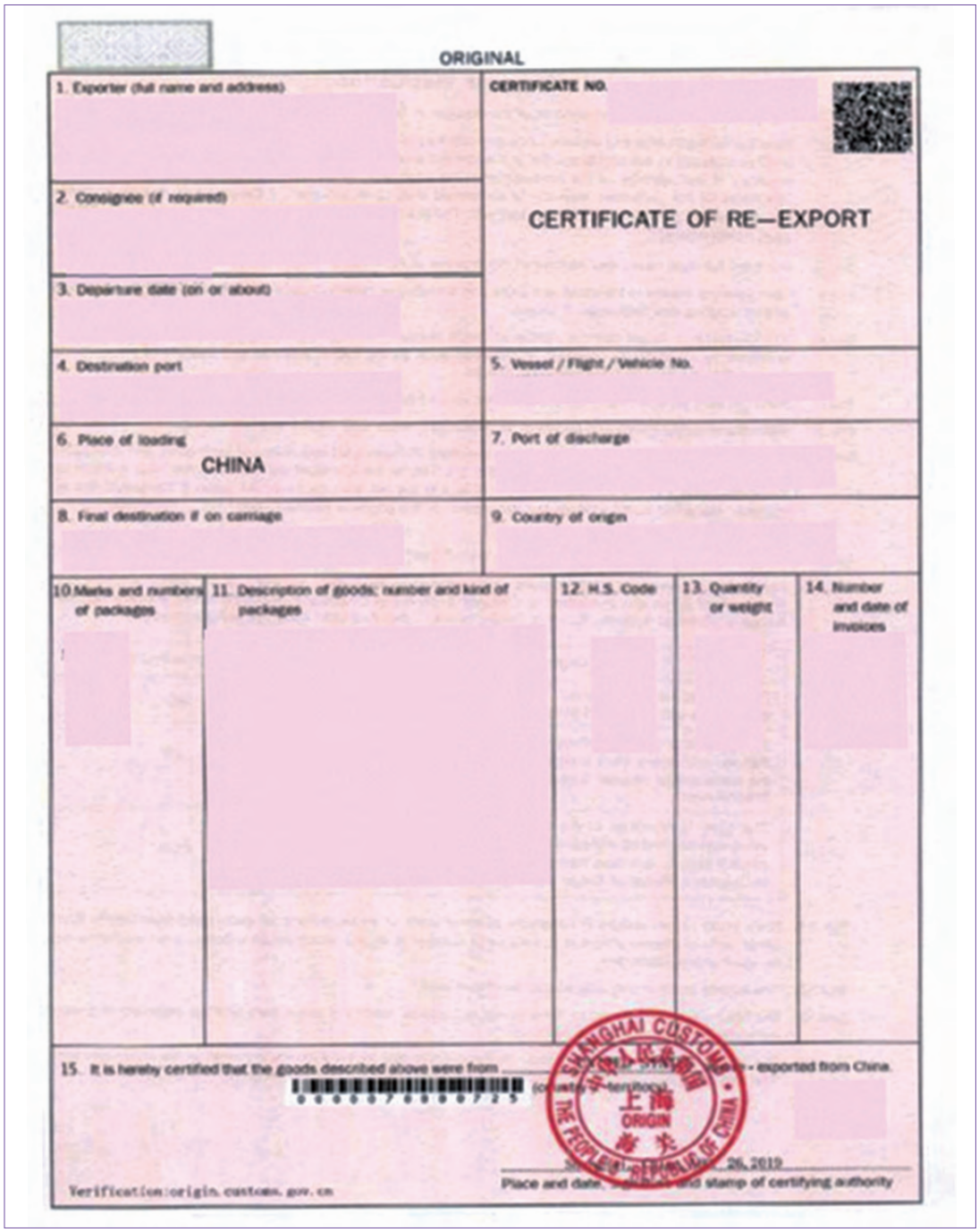

ORIGINAL

1. Exporter (full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2. Consignee (if required)

CERTIFICATE OF RE—EXPORT

3. Departure date (on or about)

4. Destination port

5. Vessel / Flight / Vehicle No.

6. Place of loading
CHINA

7. Port of discharge

8. Final destination if on carriage

9. Country of origin

10.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11. Description of good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12. H.S. Code	13. Quantity or weight	14.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5.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were from ... exported from China.

SHANGHAI CUSTOMS 上海 ORIGIN

Verification:origin.customs.gov.cn

Place and date, ...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③ 싱가포르 비가공증명서 (단순 환적 증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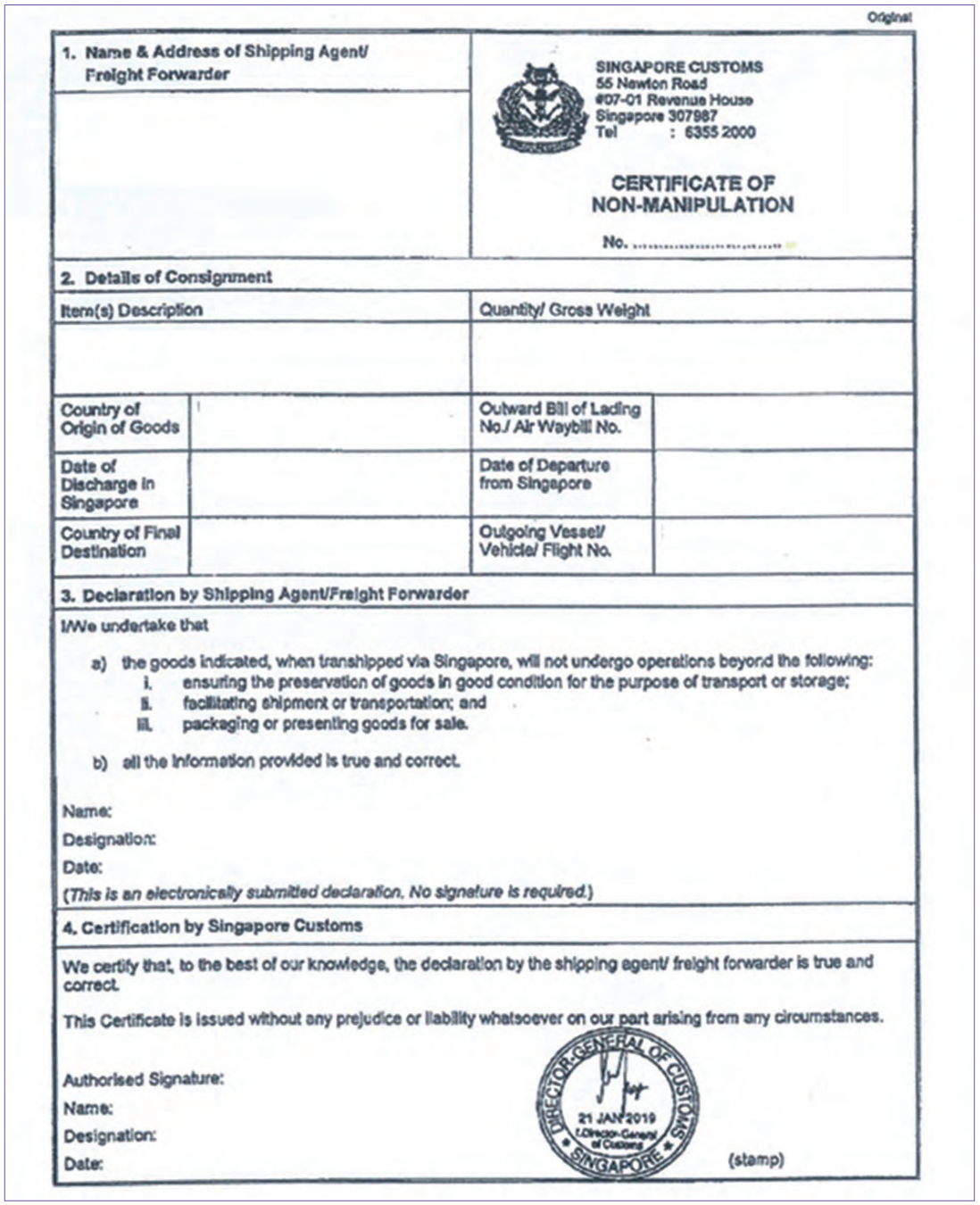

Original

1. Name & Address of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SINGAPORE CUSTOMS 55 Newton Road #07-01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Tel : 6355 2000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No. .....

2. Details of Consignment

Item(s) Description	Quantity/ Gross Weight

Country of Origin of Goods		Outward Bill of Lading No./ Air Waybill No.	
Date of Discharge in Singapore		Date of Departure from Singapor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Outgoing Vessel/ Vehicle/ Flight No.	

3. Declaration by Shipping Agent/Freight Forwarder

I/We undertake that

a) the goods indicated, when transhipped via Singapore, will not undergo operations beyond the following:
   i. ensuring the preservation of goods in good condition for the purpose of transport or storage;
   ii. facilitating shipment or transportation; and
   iii. packaging or presenting goods for sale.

b) all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correct.

Name:

Designation:

Date:

(This is an electronically submitted declaration. No signature is required.)

4. Certification by Singapore Customs

We certify that,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e declaration by the shipping agent/ freight forwarder is true and correct.

This Certificate is issued without any prejudice or liability whatsoever on our part arising from any circumstances.

Authorised Signature:

Name:

Designation:

Date:

DIRECTOR-GENERAL OF CUSTOMS * SINGAPORE * 21 JAN 2019 (Director-General of Customs)

(stamp)

④ 일본 세관통제확인서류 (단순 환적 증빙 가능)

| 일본 적려허가통지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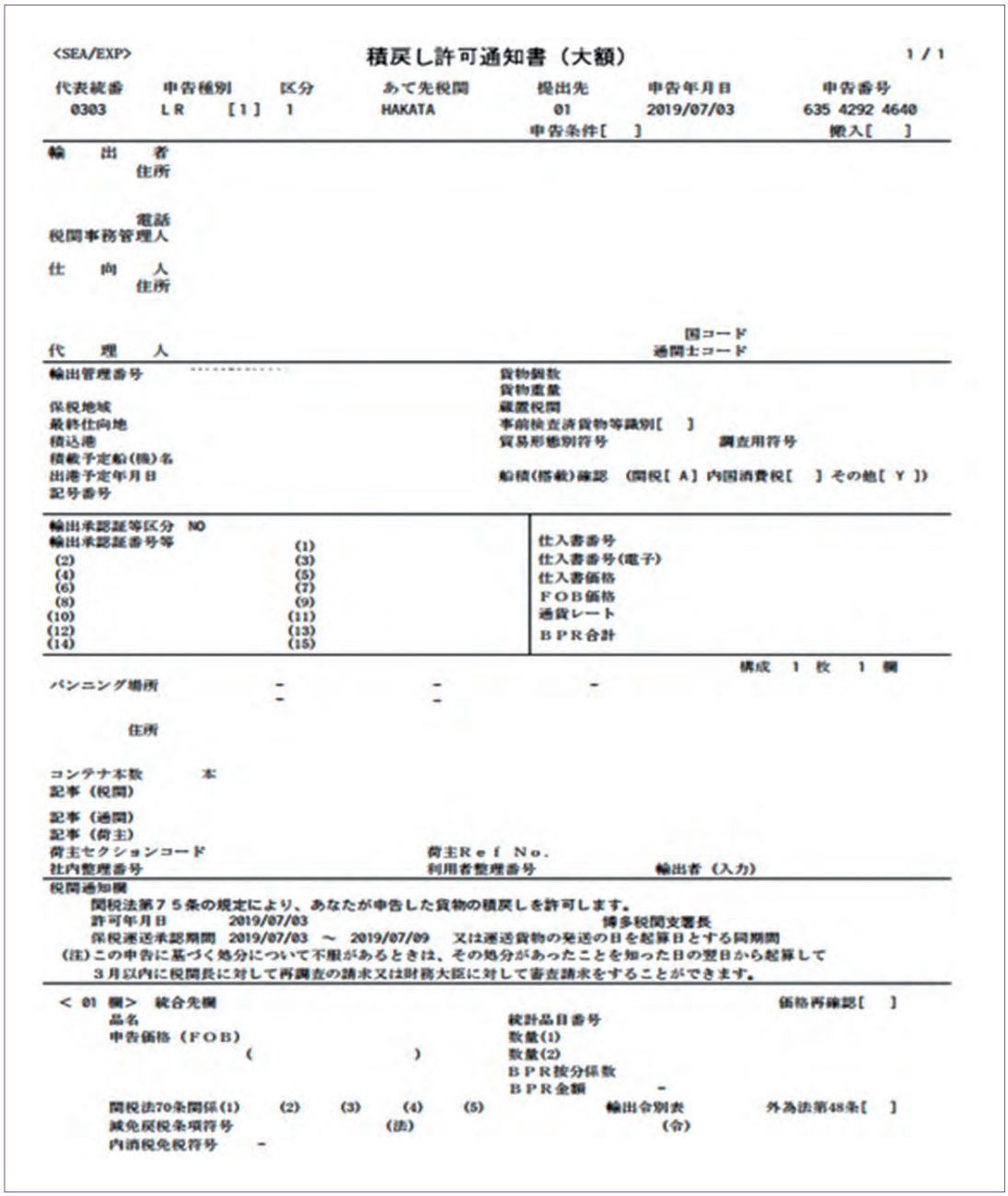

<SEA/EXP>

積戻し許可通知書（大額）

1 / 1

代表統番	申告種別	区分	あて先税関	提出先	申告年月日	申告番号
0303	LR [1]	1	HAKATA	01	2019/07/03	635 4292 4640

申告条件[ ] 搬入[ ]

輸出者
住所

電話
税関事務管理人

仕向人
住所

代理人 国コード 通関士コード

輸出管理番号 ----------
保税地域
最終仕向地
積込港
積載予定船(機)名
出港予定年月日
記号番号

貨物個数
貨物重量
蔵置税関
事前検査済貨物等識別[ ]
貿易形態別符号 調査用符号
船積(搭載)確認 (関税[A] 内国消費税[ ] その他[Y])

輸出承認証等区分 NO
輸出承認証番号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仕入書番号
仕入書番号(電子)
仕入書価格
ＦＯＢ価格
通貨レート
ＢＰＲ合計

構成 1 枚 1 欄

パンニング場所 - - -
- -

住所

コンテナ本数 本
記事（税関）
記事（通関）
記事（荷主）
荷主セクションコード 荷主Ｒｅｆ Ｎｏ.
社内整理番号 利用者整理番号 輸出者（入力）

税関通知欄
関税法第７５条の規定により、あなたが申告した貨物の積戻しを許可します。
許可年月日 2019/07/03 博多税関支署長
保税運送承認期間 2019/07/03 ～ 2019/07/09 又は運送貨物の発送の日を起算日とする同期間
(注)この申告に基づく処分について不服があるときは、その処分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の翌日から起算して３月以内に税関長に対して再調査の請求又は財務大臣に対して審査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 01 欄＞ 統合先欄 価格再確認[ ]
品名
申告価格（ＦＯＢ）
( )
統計品目番号
数量(1)
数量(2)
ＢＰＲ按分係数
ＢＰＲ金額 -
関税法70条関係(1) (2) (3) (4) (5) 輸出令別表 外為法第48条[ ]
減免戻税条項符号 (法) (令)
内消税免税符号 -

| 일본 적려화물등록정보 |

積戻貨物登録情報

輸出管理番号
Ｂ／Ｌ番号
登録者
蔵置場所
輸出者
輸出者名
申告予定者
品名
個数
重量
容積
経由地
船会社
積載予定船舶
航海番号
入港年月日
積出港
出港予定年月日
船卸港
荷受形態
荷渡形態
社内整理番号
記号番号

最終仕向地
ブッキング番号
コンテナ番号

일본 환적 시 한-미 FTA 인정 사례

- (물품) 일본 보세창고 보관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냉동 명란
- (인정 서류) ① 적려허가통지서 + ② 적려화물 등록 정보 + ③ 구간별 운송 서류 '미국 → 일본 → 한국'(단, 미국 → 일본 간 다수의 운송 서류가 국내 수입 시 합쳐질 경우에는 '④ 화물 취급 통합 등록 자료' 추가)

*②, ④ 서류의 경우, 일본 전자 통관 시스템(NACCS)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 불가한 서류 예시

| 중화인민공화국 출구화물보관단 (단순 환적 증빙 불가) |

| 중화인민공화국 진구화물보관단 (단순 환적 증빙 불가) |

08 [직접운송] 홍콩해관 APTA 중국발 경유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 발급 기관 : 홍콩해관

2. 발급 시작일 : 2019. 7. 2.

3.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내용	유형	화물 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 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2]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 화물[3]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 보관[4]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 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 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 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 서류"란, 전 운송 과정을 증명하는 운송 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 과정이 재화청단(중국 → 홍콩) 및 선하증권(홍콩 → 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 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 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참고 / 홍콩해관 발행 비가공증명서(샘플)

確認書號碼:
Certificate No.: CC/19/ (S)

香港海關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中轉確認書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致 申請者：
為符合內地與不同國家及地區所簽訂的自由貿易協定下的「直接運輸」之要求，下列貨物在香港停留期間曾接受香港海關之監管，詳情如下：
To Applicant:
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the Mainland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consignment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Hong Kong Customs in Hong Kong. Details are as follows:

第一部分 貨物詳情 Part I Consignment Particulars

來源地: Place of Origin:	
目的地: 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	從 空運/陸運/海運* ( ) 至 空運/陸運/海運* ( ) From Air/Land/Sea* ( ) To Air/Land/Sea* ( )
抵港船隻/車輛/航班編號:* Incoming Vessel/Vehicle/Flight no.:*	提單 / 空運提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1st conveyance):*
實際抵港日期/時間: ATA:	
離港船隻/車輛/航班編號:* Outgoing Vessel/Vehicle/Flight no.:*	提單 / 空運提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2nd conveyance):*
預計離港日期/時間: ETD: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件數/重量: Pieces/Weight:	

施加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

	貨櫃號碼/載具號碼/運載工具編號 Container no./ULD no./ULD vehicle no.	封條號碼: Seal no.	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	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
抵港 Incoming	-	-	-	-
離港 Outgoing	-	-	-	-

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
☐ 有 (☐ 裝貨/卸貨 ☐ 重新包裝 ☐ 儲存 ☐ 其他 ☐ 保持貨物原本狀態) ☐ 否
☐ Yes (☐ Vanning/Devanning ☐ Repacking ☐ Storage ☐ Others ☐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 No

文件查閱: Document check:
☐提單 ☐艙單 ☐原產地證明書 (號碼:_____) ☐其他(_____)
☐Bill of Lading ☐Manifest ☐Country of Origin (No.:_____) ☐Others (_____)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公司名稱: Company Name:			
公司地址: Address:			
電話號碼: Telephone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負責人姓名: Name:		日期: Date:	

香港海關印鑑:
Chop of Hong Kong Customs:

海關關長
(代行)
for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海關查詢電話: Enquiry tel. no.: (852) 3152 0233

簽發日期: Date of issue: _____

*請將不適用者刪去 Delete as appropriate

第 1 頁/共 1 頁

SAMPLE

제4장 관련 업무 지침

09 한-중 FTA 홍콩 경유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 서류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 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 교부)

발급 장소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 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 海關大樓7樓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 赤角香港國際機場 超級一號貨運站1樓
근무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24시간
전화번호	(852)-3152-0233	(852)-2116-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중국 ⇒ 한국) ('17. 4. 10.(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내용	유형	화물 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 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2]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 화물[3]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 보관[4]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 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 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 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련의 운송 서류”란, 전 운송 과정을 증명하는 운송 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 과정이 재화청단(중국 → 홍콩) 및 선하증권(홍콩 → 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 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 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상기 장소는 부두 내 On Dock Container Yard로 추정됨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5. 신청 절차

- (신청 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 (신청 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E-mail : fta_enquiry@customs.gov.hk / Fax : (852)-3152-0183
  - 비가공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 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 위임장(필요 시)
    f. 홍콩 경유(환적) 기간의 보관 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 서류(필요 시)

● 신청 비용

: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 비용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 방식 및 처리 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 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종류	운송 방식	처리 방법	비용(HK$)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 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625
B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 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910
C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 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1,470
D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155

※ 홍콩해관은 운송 방식 및 필요한 처리 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직접운송]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한-EU FTA 직접운송 증명에 관한 지침

적용 대상

- 철도를 이용한 국제복합운송* 제품으로서, 한-EU FTA 체약 당사국이 아닌 여러 국가를 거쳐 환궤,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수입된 제품(이하 '철도복합운송 제품'이라 함)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운송

철도복합운송 제품의 직접운송 증명 방법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 제1항의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동조 제2항 각목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할 때, 나목의 '단일 운송 서류'는 다음의 서류 포함

  : 수출국,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복합운송 주선인이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한 복합운송증권

  - 출발지, 경유지(단순 환궤를 위한 경유지는 생략 가능), 목적지가 기재되고, 컨테이너 번호와 컨테이너 봉인(Seal) 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컨테이너 번호 또는 컨테이너 봉인(Seal) 번호가 변경된 경우, 상기의 복합운송증권에 다음의 서류 추가 구비

  - 변경이 발생한 경유국에서 발행된 변경 사유와 변경 시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일

- 2019. 12. 31.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

Guidebook

5

FTA 활용 유의사항

01.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직물' 누적기준 활용
02. 對 베트남 조미김 수출 시 유의사항
03. 對 터키 수출 기업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04. 한-미 FTA 섬유류 미소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05. 인도 측 한-인도 CEPA 및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방법
06. 인도 원산지 검증 강화에 따른 한-인도 CEPA 활용 유의사항
07. 한-아세안 FTA의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

01 EU-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직물' 누적기준 활용

배경

- 2020년 8월 1일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
- EV FTA에서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 ⇨ 기업의 베트남 직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기준' 활용도>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직물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규정*과 직접운송 원칙 준수
  *직물의 원산지는 한-EU FTA 협정상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과 직물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직접 수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산지 증빙 방식으로 결정
- 한-EU FTA 6천 유로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는 섬유 업체가 EV FTA에 따른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함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02 對 베트남 조미김 수출 시 유의사항

배경

- '17. 9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미김'의 품목 분류를 '기타의 조제 식료품(HS2106.90호)'에서 '식물의 기타 조제품(HS2008.99호)'으로 결정

동향

- 베트남에서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한국산 조미김 수출 업체에 대해 HS2008.99호에 해당하는 고율의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하려는 동향이 있음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제도(Reciprocal Arrangement)

수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수출국 양허 수준 부과
⇨ 한국산 조미김(한국의 민감 품목)을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베트남은 조미김을 일반 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국산에 대해 FTA 세율(0%)이 아닌 MFN 관세율(40%) 적용 가능

유의사항

- 베트남으로 조미김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상호주의 제도가 없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할 것을 권함

03 對 터키 수출 기업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배경

- 터키 측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건수는 66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3건과 비교하여 962% 급증 ('20. 4. 15. 기준)

주요 특징

- 주로 한국산 화학 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 제품 등을 제3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결제*하고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직접운송되었음에도 우회 수출로 의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한-터키 FTA는 제3국 거래를 허용하나, 터키 관세당국은 한국의 수출자가 아닌 FTA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발행한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서명한 경우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음

- 아울러 터키 관세당국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경우, FTA 관세 혜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관세 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협정의 비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주의사항]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 터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 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 (사례) 한국 수출자 ○○○은 패킹 리스트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 □□□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 발행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신고서는 부적정

2	원산지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주의사항]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례) 한국 수출자 ○○○은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부적정

3	**원산지신고 문구**(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주의사항]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 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 서류**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수기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한-터키 FTA 직물류 원산지결정기준 유의사항' 참고자료
: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공지사항(No.626)

04 한-미 FTA 섬유류 미소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배경

- 한-미 FTA에서는 다른 협정과 달리 섬유 관련 제품(섬유 및 의류)은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 제7항(최소 허용 수준)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일반 물품에 적용되는 최소 허용 수준*과는 다른 별도의 요건 존재
- 제50류~제63류, 제7019호 등 '섬유 관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최소 허용 수준 규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미 CBP 섬유류 원산지 검증에 대비가 필요

한-미 FTA 협정문

(제4.2조 제7항 최소 허용 수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 원료 또는 원사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섬유 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 요소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최소 허용 수준(미소기준) : 어떤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비중이 당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하여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 단,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원산지 물품으로 특혜 적용 배제

유의사항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에 섬유 원료 또는 원사 이외의 재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원산지 섬유 원료 또는 원사의 중량이 그 구성 요소(섬유 원료 또는 원사) 총 중량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총 중량의 기준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로 오인, 최소 허용 수준 계산 오류로 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님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자료 출처 : 서울본부세관)

예시

오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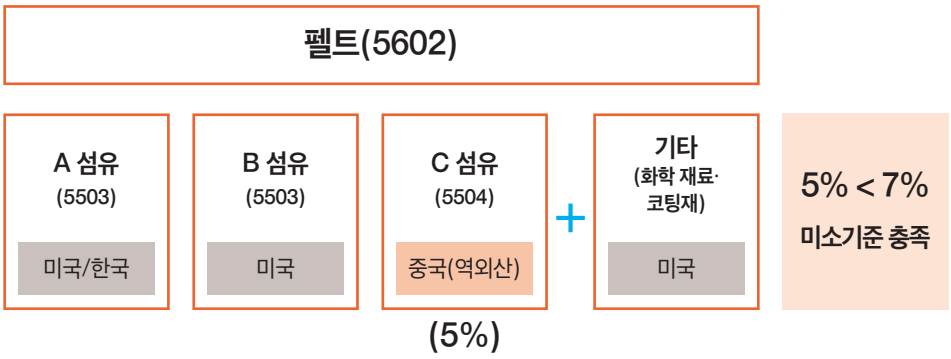

정상 사례

※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구성 요소 : 섬유 원료 또는 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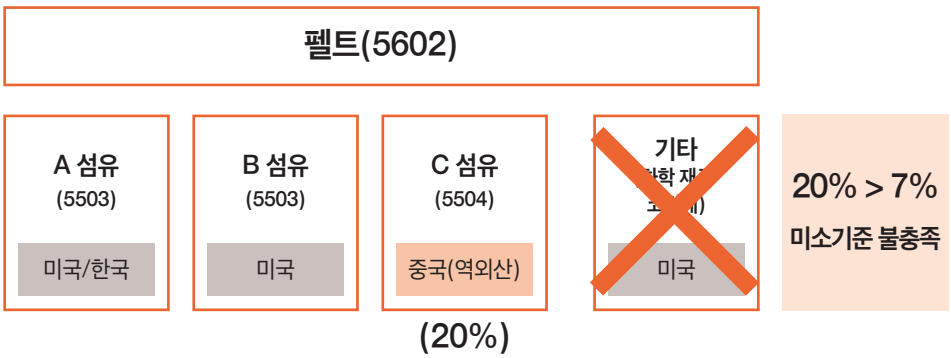

05 인도 측 한-인도 CEPA 및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방법

한-인도 CEPA 인도 측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 안내

- [대상] 모든 인도 C/O 발급 기관*이 발행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 수출검사위원회, MPEDA(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 수산물수출개발원, TEXCOM(Textile Committee) : 섬유위원회
- [시행일] '20. 3. 6.
- [변경 내용] C/O 번호 체계, QR 코드 도입 등
  - 「발급기관코드 + 일련번호」로 C/O 번호 체계 변경
  - 원산지증명서의 홀로그램을 QR 코드로 변경
  - 일부 항목의 칸 크기 변경

<table>
<tr><th>기존</th><th>개정</th></tr>
<tr><td>IK + 8자리 숫자
예) IK12345678</td><td>기관코드/4자리 숫자/3자리 숫자/7자리 숫자+1자리 알파벳/8자리 숫자
예)
<table>
<tr><th>기관코드</th><th>일련번호</th></tr>
<tr><td>EIC</td><td rowspan="3">/2019/007/0000769A/00000028</td></tr>
<tr><td>MPEDA</td></tr>
<tr><td>TEXCOM</td></tr>
</table></td></tr>
</table>

인도 측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방법

- [배경]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되고 있음
  *C/O 발급번호 체계 변경(10자리 → 26~29자리), QR 코드 도입 등

예시)

기관코드(3~6자리)	일련번호(23자리)
EIC or MPEDA or TEXCOM	/2019/007/0000769A/00000028

- [수입신고서 입력 방법]
  - 신고인은 인도 수입 물품에 대한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중 "/"를 제외한 전체 번호(기관코드 + 일련번호, 최대 29자리 입력 가능) 입력
- [시행일] '20. 7. 31.

인도 발행 원산지증명서 진위 조회 방법

1. QR 코드 활용 조회

1)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QR 코드를 스마트폰 사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

2) QR 코드와 연결된 홈페이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정보 확인*

*인도 원산지증명서 디지털 발급 플랫폼(https://coo.dgft.gov.in)으로 연결될 경우 2번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정보 조회 및 확인

3) 홈페이지의 원산지증명서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동일할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 신청 승인 가능

2. 인도 원산지증명서 발행 플랫폼에서 조회

1) https://coo.dgft.gov.in 홈페이지 접속

2) 중앙 하단에 원산지증명서 번호('/' 포함) 입력 및 조회

3) 조회된 정보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동일할 경우 협정(특혜)관세 적용 신청 승인 가능

06 인도 원산지 검증 강화에 따른 한-인도 CEPA 활용 유의사항

배경

- 2020년 9월 21일 인도 무역협정 원산지 관리 규칙 제정·시행
  ※ 인도 관세청 공고 81/2020 - Customs(N.T.)
- 한국, 일본 등과의 FTA로 인도 무역수지 적자 영향을 지적하며 경제 개방과 함께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주문(인도 경제자문위원회)으로 법적 근거 마련
  ※ 인도 관세법에서 위임한 '수입자가 보유할 정보'를 최소한 기본적 정보(FORM 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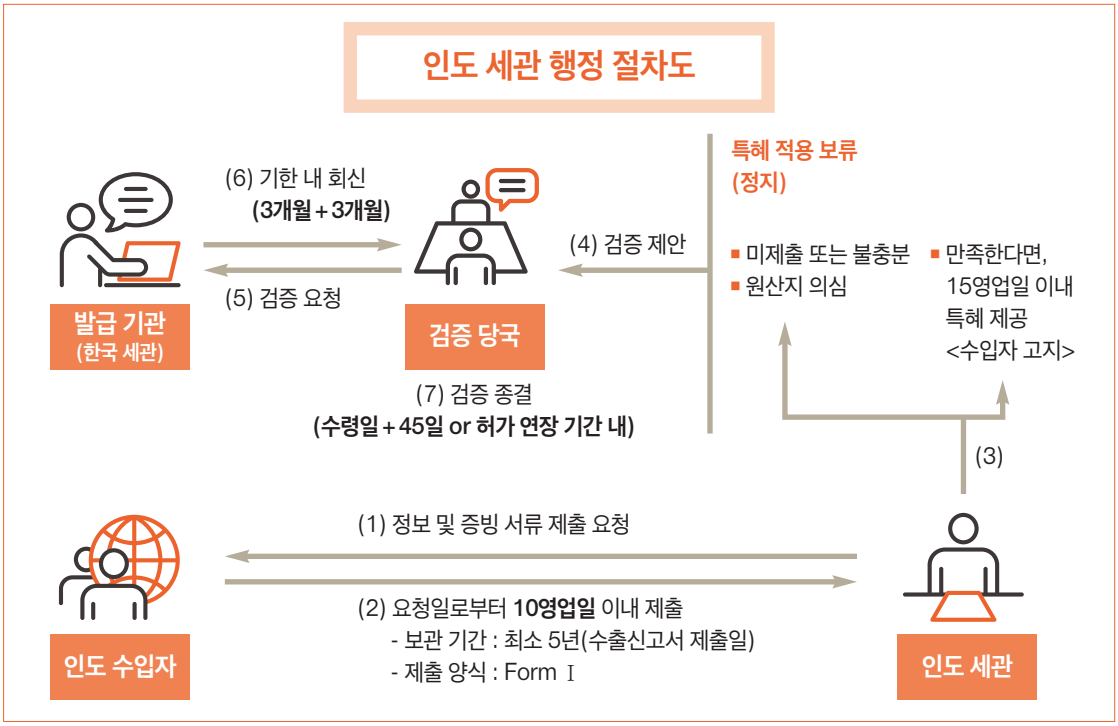

인도 현지 관련 문의처 : 회사 직인이 찍힌 레터지(증빙 스캔) 권장

- 주소 : Department of Revenue, Ministry of Finance Room No. 49, North Block, New Delhi, 110001
- 사무실 번호 : 91-11-2309-3380, 팩스 : 91-11-2309-3760
- 이메일 : ftaroo-cbic@gov.in

Form I

Section 2 수입면장 제출 후 작성

일련번호	품목명	HS(8자리)

(A) 수입자 이름
(B) 수입신고서 번호 및 이름
(C) 수입신고서 접수 세관
(D) 특혜관세 신청 물품 정보

Section 3-Part A 수입 전 정보 확보

제품 설명	생산 프로세스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WO : 완전 생산 기준
RVC : 역내 가치 비율
CC/CTH/CTSH : 2/4/6 단위 변경 기준
RVC + CTH/CTSH : 결합 기준

Section 3-Part B 비원산지 재료/원자재만 있을 경우 ⋯› 없음(None) 표시

원산지 재료·부품	최종재 생산자 생산 여부(Y/N)	제3자로부터 생산자가 현지 구매 여부(Y/N)	제3자 구매 시 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취 여부(Y/N)
1.			
2.			

완전 생산 제품이 아닐 경우 ⋯› HS Code에 따른 제품별 각 재료·부품에 대해 상기 내용을 기입
증빙이 안 될 경우 ⋯›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

Section 3 추가정보

구분	질문	답변(예/아니오)
A	역내산 결정 시 최소 허용 수준(미소기준) 사용 여부 * 협정 제3.8조 : 일반 상품(FOB의 10%), 섬유(기초섬유재료 총 중량의 7%)	예(백분율 또는 양) / 아니오
B	역내산 결정 시 누적 조항 적용 여부 * 제3.7조 : 상대국 영역 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생산에 결합	예(누적 방식, 범위) / 아니오
C	역내산 결정 시 간접 재료, 중립재, 포장 재료 등 추가 기준 * 제3.5조(간접 재료) :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음 * 제3.10조(포장 재료) : 부가가치세 적용 시 원산지를 고려하여 반영해야 함	예(사용된 기준) / 아니오
D	역내 가치 포함 비율을 적용했는지 여부 * 제3.4조2항 : RVC = (FOB 가격 - 비원산지 재료비) / FOB 가격×100 * FOB 가격 : 실제 지급 금액(수출항 선적 시까지 모든 운송 비용 포함) / 관세평가협정 * 비원산지 재료비 : 수입품(CIF 가격), 원산지 미상(최초 지급 확인 가격)	예(현재 구매 비율, 역내 발생 부가가치 구성 요소) / 아니오 * 요소 : 재료비, 이윤, 노무비, Overhead Cost 등
E	원산지 재료 인정을 위해 CTC(세번변경기준) 적용 여부	예(비원산지 재료 HS) / 아니오
F	요청 대상 물품 원산지 결정 시 공정 기준 적용 여부 * 공정 기준 : Process Rule로 표시되며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은 섬유 등 일부	예(적용된 기준) / 아니오
G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여부 * 제4.4조4항 :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 일수 7일 이내 발급되지 않을 때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기재	예(사유) / 아니오
H	해당 탁송품이 원산지국에서 직접운송 여부 * 제3.15조2항 : 제3국 경유 수송 시 (1) 경유국 거래 또는 소비 금지 (2) 양호한 상태 유지 공정만 수행 (3) 경유국 세관 통제 조건 필요	예 / 아니오(예외 허용 확인) * 직접 운송 조건 부합 여부를 어떻게 확인?

- 출처 : 관세청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참조 출처 : KOTRA 뉴델리무역관 현지 시장 뉴스(1254번,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안내사항

-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 관리 규정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 원산지 관리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인도 수입자가 강화된 자국 원산지 관리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 거래처 및 국내외 운송대리인 등과 필요한 범위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 인도 수입자가 수출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 중인 '21년도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확정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8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gwangjufta@korea.kr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fta016@korea.kr

07 한-아세안 FTA의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

국가	신청 기간	신청 요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요구 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 적용 신청 의사 통지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해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 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리핀	수입 후 6개월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 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 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Post guarantee bond)* 제시 *수입 후 6개월 내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Bond는 취소, 미제시 시 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 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표명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Duties)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 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수입 시 소급 적용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

Guidebook

6

참고사항

01. 협정별 세율 정보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방법
02. 원산지관리전담자 관련 교육 사이트
03.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04. FTA 협정별 인장 및 서명 통보 의무
05.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비교
06. FTA 협정별 HS 기준
07. 한-중 FTA 중국 측 C/O 발급 방식 개선 현황
08. 중국·인도네시아 통관 진행정보 조회
09. 국가별 C/O 발급정보 조회
10.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1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12. 미국 · 베트남 현지 공익관세사 제도

01 협정별 세율 정보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방법

협정별 세율 정보 검색 방법

①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② 사이트 하단의 “세계 HS 정보 시스템” 클릭

③ 수출 대상 국가(예 : 미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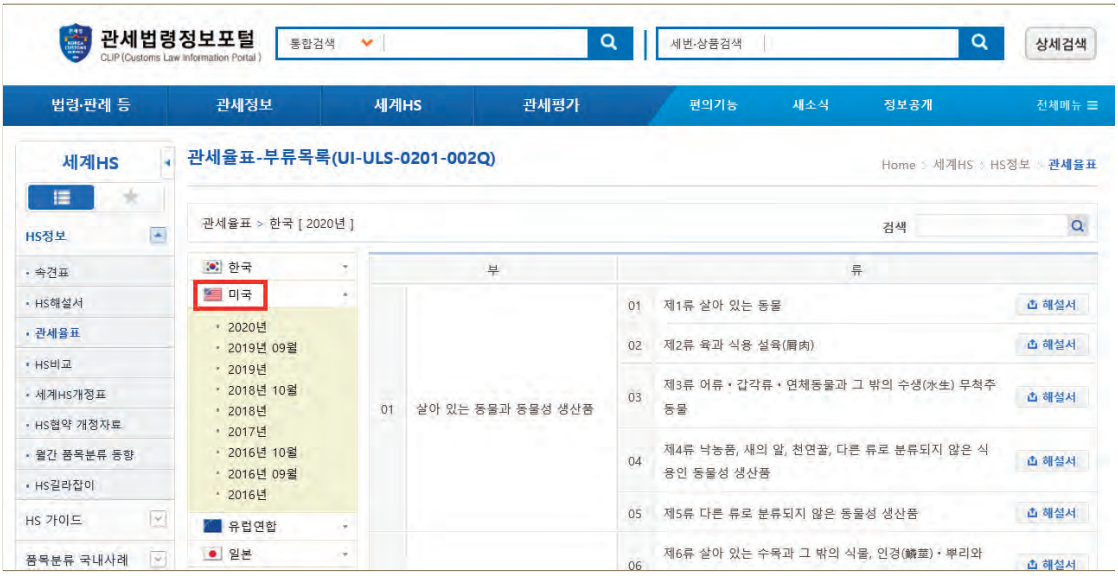

④ 사이트 우측 상단 관세율표 검색란 HS 코드 6단위를 입력하고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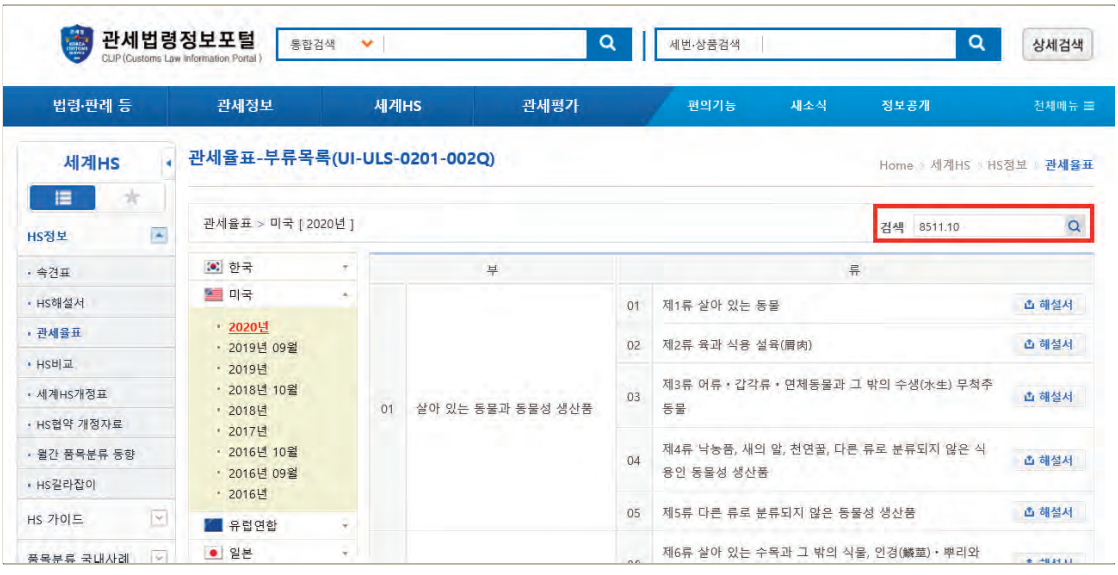

⑤ 기본 세율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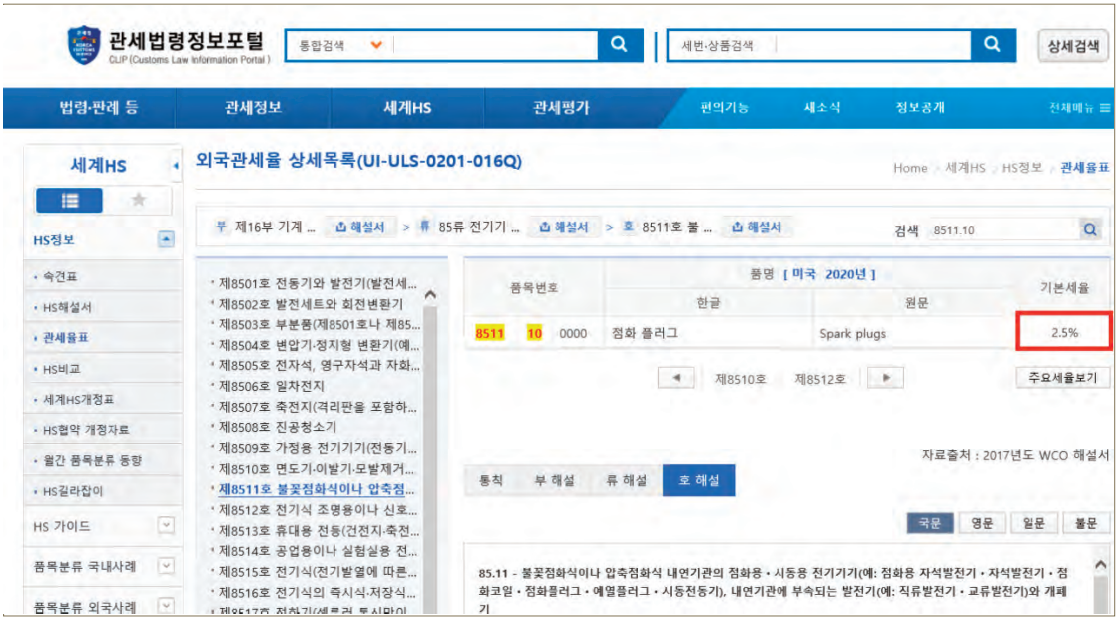

⑥ 기본 세율과 협정 적용 세율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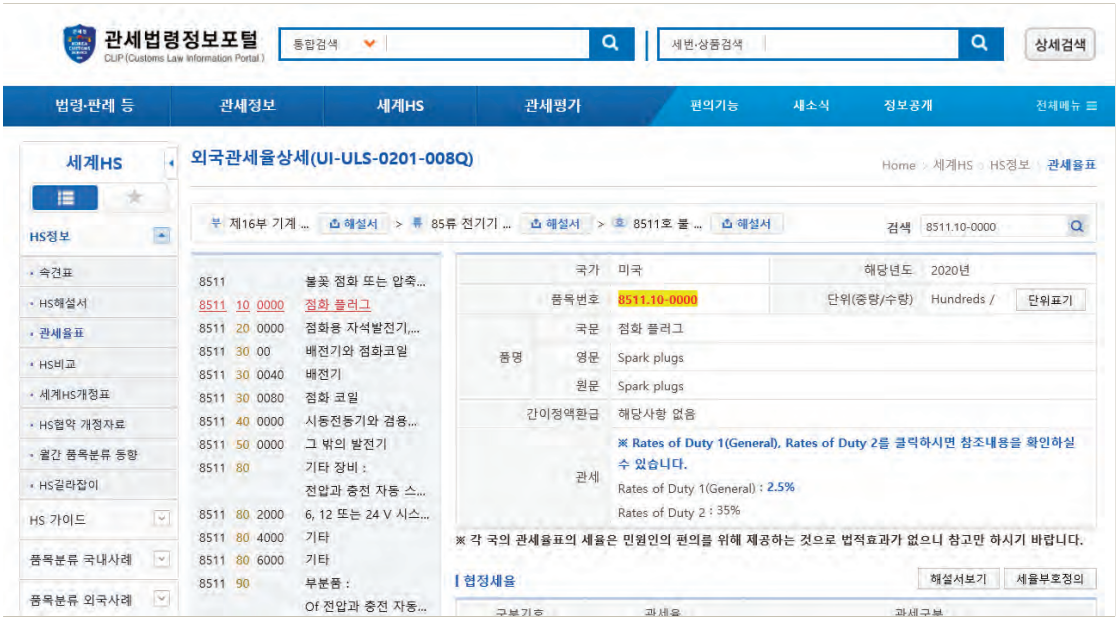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방법

① 관세청 FTA 포털에 접속 후 사이트 우측 상단의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클릭

② 해당 국가 클릭 후 검색란에 HS코드 6단위를 입력하고 검색
③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02 원산지관리전담자 관련 교육 사이트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 방법

①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https://cti.customs.go.kr/)를 통해 회원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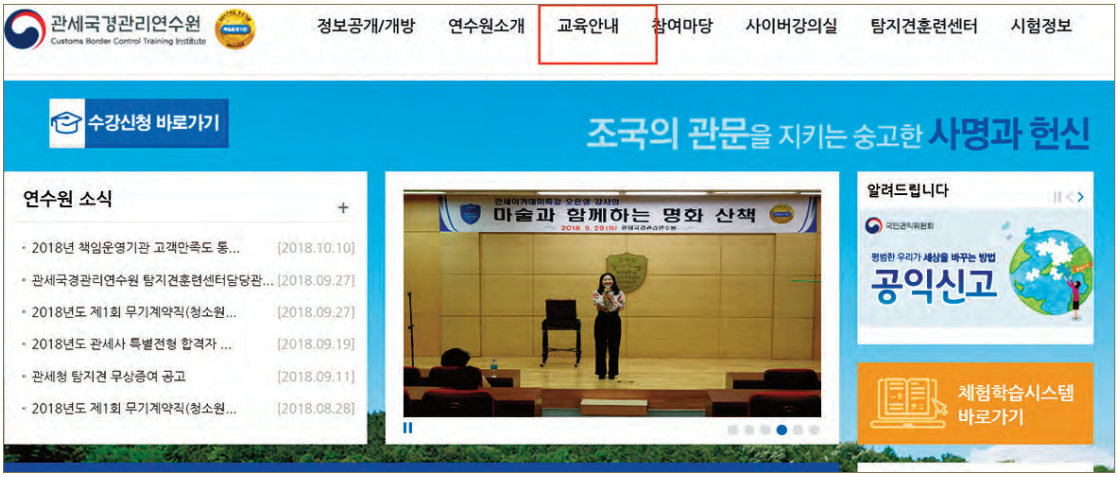

② 로그인 후 상단의 교육 안내 > 교육 현황 > 월별 교육과정 > 민간 사이버 FTA 신청

※ 당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 점수 10점 부여

원산지관리전담자 관련 교육 사이트

① YES FTA 교육지원센터(http://www.yesftaedu.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 전화 : 1544-5702
- 이메일 : yesftaorigin.or.kr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증의 교육 종료일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03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방법

발급 기관 : 관세청

-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

① 관세청 Uni-Pass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FTA

②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 신청 개요 > 공통사항 > 공통 내역 순차적으로 작성

발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

①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원산지증명서 >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FTA 체결 원산지증명서 등 선택 신청

04 FTA 협정별 인장 및 서명 통보 의무

구분	해당 조문	통보 범위	통보 방법
한-아세안	부록1 제2조(발급 기관)	발급기관 명칭, 주소, 견본 서명, 견본 관인	아세안 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
한-인도	협정 제4.2조(발급 기관)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 세트	-
한-중국	협정 제3.16조(권한 있는 기관)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과 관련 연락처, 권한 있는 기관이 사용하는 관련 양식 및 문서에 대한 모든 인장 견본의 세부사항	통보일로부터 7근무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적시된 더 늦은 날 발효
한-호주*	협정 제3.16조(권한 있는 기관)	호주 측 권한 있는 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인장 날인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세부사항	변경 시 신속 통보
한-베트남	협정 제3.15조(발급 당국)	발급 당국 이름과 인장	통보일로부터 15일 후 또는그러한 통보에 명시된 더 늦은 날 발효
한-싱가포르	협정 제5.2조(원산지증명서)	권한 있는 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서명자가 사용하는 서명 및 관인의 견본	변경 시 즉시 통보

* 한-호주 FTA에서 우리나라는 자율 발급 방식, 호주는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ACCI, AIG) 방식 모두 채택

※ 한-EU, 한-미국, 한-EFTA, 한-뉴질랜드, 한-칠레, 한-페루, 한-터키, 한-콜롬비아, 한-캐나다 등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은 해당사항 없음

05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 비교

	증명 방식	발효 일자	증명 주체	증명 서식	C/O 면제	유효 기간
칠레	자율 증명	'04. 04. 01.	수출자	통일서식 (제5.2조3)	미화 1,000$ 이하	2년
싱가포르	기관 발급	'06. 03. 02.	싱 : 세관 한 :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입주 기업)	별도서식 (제5.2조1)	미화 1,000$ 이하	1년
EFTA	자율 증명	'06. 09. 01.	수출자 또는 생산자	송품장 문안 기재 (부속서1의 부록3)	미화 1,000$ 이하	1년
아세안	기관 발급	'07. 06. 01. ~ '10. 01. 01.	아 : 각국 정부 기관 한 :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 서식 (AK FORM) (부록1 제5조1)	미화 200$ 이하	1년
인도	기관 발급	'10. 01. 01.	인 : 수출검사위원회, 섬유협회, 수산물수출개발청 한 :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 서식 (제4.4조1)	개인 및 여행자 수하물	1년
EU	자율 증명	'11. 07. 01.	수출자	송품장 문안 기재 (부속서3)	미화 1,000$ 이하	1년
페루	자율 증명	'11. 08. 01.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 서식 (부속서4나)	미화 1,000$ 이하	1년
미국	자율 증명	'12. 03. 15.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필수 항목 기재 (제6.15조2) 권고 서식	미화 1,000$ 이하	4년
터키	자율 증명	'13. 05. 01.	수출자	송품장 문안 기재 (부속서3)	미화 1,000$ 이하	1년
호주	자율 증명 (양국) 기관 발급 (호주)	'14. 12. 12.	(자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기관)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	필수 항목 기재 (부속서3-다) 표준 서식	미화 1,000$ 이하	2년
캐나다	자율 증명	'15. 01. 01.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 서식 (제4.1조1)	미화 1,000$ 이하	2년
중국	기관 발급	'15. 12. 20.	중 : 세관, 무역촉진위원회 한 :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 서식 (제3.15조1)	미화 700$ 이하	1년
뉴질랜드	자율 증명	'15. 12. 20.	수출자 또는 생산자	필수 항목 기재 (제3.19조) 권고 서식(2종) (부속서3-다)	미화 1,000$ 이하	2년
베트남	기관 발급	'15. 12. 20.	베 : 산업무역부 한 : 세관, 상공회의소	통일 서식 (제3.14조1)	미화 600$ 이하	1년
콜롬비아	자율 증명	'16. 07. 15.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 서식 (부속서3-다)	미화 1,000$ 이하	1년
중미	자율 증명	'19. 10. 01.	수출자 또는 생산자	통일 서식 (부속서3-다)	미화 1,000$ 이하	1년
영국	자율 증명	'21. 01. 01.	수출자	송품장 문안 기재 (부속서3)	미화 1,000$ 이하	1년

06 FTA 협정별 HS 기준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원산지 결정 기준	2012	2012	2012	2017	2007	2007	2007	2012	2007	2012	2012	2012	2007	2012	2012	2012
수입 시 세율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Guide

EFTA(4개국)

스위스(Switzerland), 노르웨이(Norway), 아이슬란드(Iceland),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SEAN(10개국)

말레이시아(Malaysia), 싱가포르(Singapore), 베트남(Vietnam), 미얀마(Myanmar),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브루나이(Brunei), 라오스(Laos), 캄보디아(Cambodia), 태국(Thailand)

EU(27개국)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체코(Czech Republic), 키프로스(Cyprus), 덴마크(Denmark), 에스토니아(Eston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 네델란드(Netherlands),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불가리아(Bulgaria), 루마니아(Romania), 크로아티아(Croatia)

07 한-중 FTA 중국측 C/O 발급 방식 개선 현황

주요 내용

- (적용 협정) 한-중 FTA
- (발급 기관)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개선 내용) 발급 기관 담당자의 전자적 서명 및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C/O 신청인이 직접 출력 가능
  ※ 기존 수기 서명 방식과 병행 운용
- (시행일) 2018. 4. 1.

진위 확인 및 위조 방지 장치

- (진위 확인) C/O 5번란에 입력된 QR코드를 스캔할 경우 C/O 번호, 수출자 이름·주소, 송품장번호, HS코드 및 발급 장소 확인 가능
- (위조 방지 표시)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에 회색 사각형 위조 방지 표시가 있으며, 사본인 경우 이 표시에 '사본(COPY)' 기재

08 중국·인도네시아 통관 진행정보 조회

중국

① YES FTA 포털-CO-PASS > C/O 진행정보

② CO-PASS 진행정보 확인 > 협정/국가 입력 > 전송 구분 입력 > 발급번호 입력 > 참조코드(Ref) 입력 > 전송 성공(SUCCESSED) 확인

08 중국·인도네시아 통관 진행정보 조회

인도네시아

① YES FTA 포털-CO-PASS > C/O 진행정보

② CO-PASS 진행정보 확인 > 협정/국가 입력 > 전송 구분 입력 > 발급번호 입력 > 전송 성공(SUCCESSED) 확인

09 국가별 C/O 발급정보 조회

① YES FTA 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정보

② 해당 발급 국가의 조회 기관을 선택하여 바로가기 주소 클릭

10 FTA 원산지 간편 인정 제도

목적

-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전통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도입

근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형태(관세청 고시)로 운영
- 관세청장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정관리등록증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도

대상 품목

-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
- 2017년도에 김치 등 32개 전통식품 추가('17. 10. 20.)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전통 식품
인증서 (13종)	①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② 우수관리인증서 ③ 친환경농산물인증서 ④ 지리적표시등록증	① 등급판정확인서 ② 축산물이력관리등록증 ③ 우수브랜드인증서	① 물김 수매확인서 ②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③ 우수관리인증서 ④ 지리적표시등록증 ⑤ 마른 김 수매확인서 ⑥ 유기수산물인증서	① 전통식품품질인증서
품목	고추 등 1,028개	소고기 등 5개	물김 등 81개	김치 등 32개

발급 기관 및 인정 서류

- **발급 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 김에 한함)]
- 한국식품연구원
-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 인정 서류

- 「관세청장이 인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상의 서식 1~15

구분	서류명	발급 근거	서식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⑮ 정부 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 관리양곡의 판매)	서식15
수산물	⑤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5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6
	⑦ 수산물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서식7
	⑧ 수산물지리적표시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8
	⑨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서식9
	⑩ 유기수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0
축산물	⑪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서식11
	⑫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서식12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3
전통식품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서식14

※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 판정된 축산물에 한정

11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의의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수입자, 체약 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 해당 협정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미국,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한-EFTA는 제외)

신청 및 심사 절차

- 신청인 : 한국의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그 대리인
- 신청 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신청 대상
  1)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재료의 품목 분류·가격 또는 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신청 시기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처리 기간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 이의 제기 :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서류 및 수수료

- 사전심사신청서
-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물품당 3만 원

사전심사서의 효력

-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전심사서의 유효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전심사서의 반복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음(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12 미국 · 베트남 현지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 목적

- 현지 근무 경험이 있거나 활동 중인 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현지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 및 통관 과정상의 애로를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미국 LA 공익관세사

- LA 총영사관에서 미국 현지 한국계 관세사 7명을 공익관세사로 위촉, 한국 소재 수출 기업들에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베트남 공익관세사

- 현지 근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4명을 위촉하여 2명은 베트남 현지에서, 2명은 국내에서 활동하며 베트남 수출 기업을 지원

주요 업무

▶ 수출입 통관 분야 관련 상담(수출 통관 절차, 요건 확인 대상 여부 등)
▶ 한-베트남/한-아세안 FTA 활용 관련 상담(품목 분류, 원산지결정기준, FTA 협정세율 등)
▶ 업종별 현지 시장 정보 상담

공익관세사 제도 지원 부서 연락처

본부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3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참고 법령 및 자료

참고 협정문 및 법령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한-칠레, 한-EFTA, 한-EU, 한-미국, 한-터키,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페루, 한-호주 FTA 협정문,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 절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수출 물품 원산지 증명 발급 규정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참고 웹사이트

- https://www.wto.org/
- https://www.customs.go.kr/
- https://www.ftapass.or.kr/
- https://unipass.customs.go.kr/
- http://cti.customs.go.kr/
- http://www.kita.net
- https://www.ksure.or.kr

COUNTRY OF
ORIGIN MANAGEMENT
GUIDEBOOK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처 | 부산본부세관

| 발행인 | 부산본부세관장 이명구

| 검　토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기　획 |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강경훈
기업지원팀장 이달근/김훈

| 편　집 | 이호준, 위창민, 이상희, 김미영, 김성우, 공예빈, 홍유진, 이해정, 남진영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
Tel. 051-620-6952 Fax. 051-620-1118

| 발간등록번호 | 11-1220299-000010-01

| 디자인·인쇄 | 유진퍼스콤 Tel. 051-257-1595~6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

FTA부터 비특혜 원산지까지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